농업인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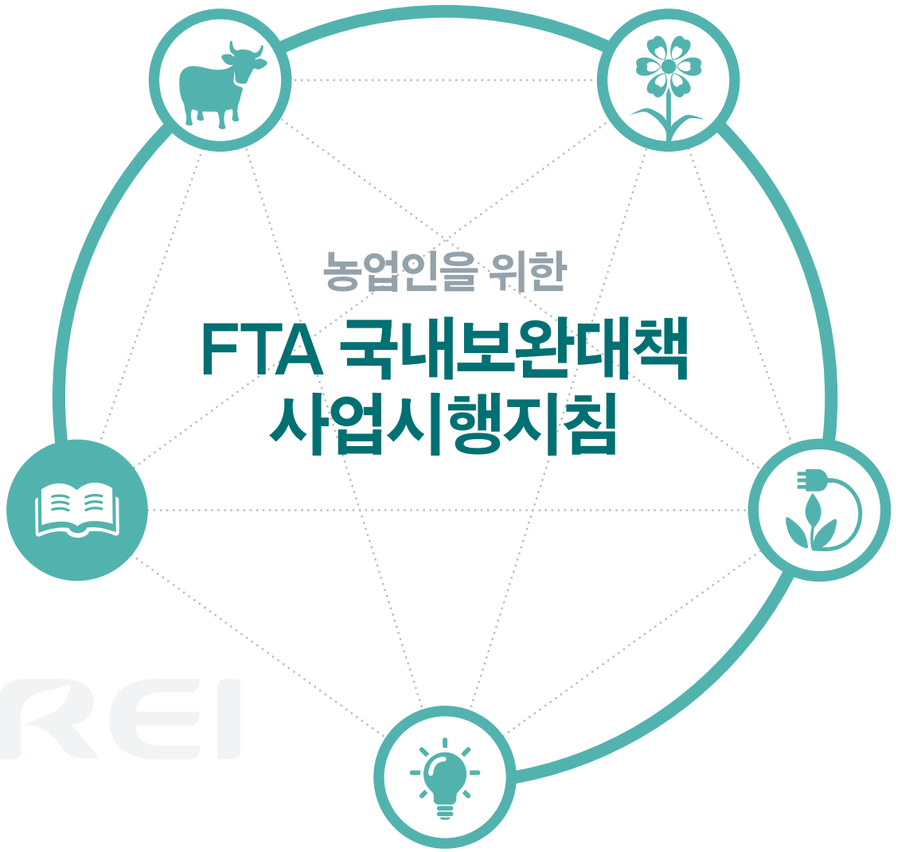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시행지침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 820-2211 http://www.krei.re.kr

농업인을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시행지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농업인을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시행지침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와 한 · EU, 한 · 미 FTA 및 한 ·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된 자료입니다.
일부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통합 ·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조회 시점에 따라 사업 시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축산 경쟁력 제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007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009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011
축산계열화사업 013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015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016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018
농식품시설현대화 021
가축재해보험 023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026
가축질병공제시범사업 026
한국형메쯔거라이경영컨설팅 026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027
혈액자원화시설 029
축산물통계관리시스템구축 029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029
축산자조금지원사업 030
송아지생산안정사업 032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 034
가공원료유지원사업 036
축산물이력제 038
축산물HACCP컨설팅 03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041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046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048
친환경동물복지직불제 052
악취저감시설지원 054
축산환경관리원 054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054
친환경축산물유통활성화및직거래지원 055
가축방역사업 055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사업 057
가축질병대응 058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059
가축개량지원사업 061
축산물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사업 063

원예 경쟁력 제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065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067
과원규모화사업 069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071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07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075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078
인삼 · 약용작물계열화사업 080
인삼생산 · 유통시설현대화사업 083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085
식품 · 외식종합자금사업 088
감자저온저장시설지원 090
맥류건조 · 저장시설지원사업 090
콩유통종합처리장지원사업 091
계열화경영체육성사업 093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094
마늘 · 양파자조금사업 096

맞춤형농정 추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099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100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102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03
농업경영체등록 104
농업재해보험 106
농업재해재보험금 108
밭농업직불제 109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10
농기계임대사업 112
농지매입 · 비축사업 113
경영이양직접직불제 114
농지연금 116
수리시설개보수 118
배수개선 12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121

신성장동력 창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23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125
국가인증농식품지원 128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건립 129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3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31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 133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34
종자산업기반구축 135
품종심사및재배시험 139
원원종및원종생산 141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142
골든시드프로젝트 143
마늘우량종구생산단지조성사업 144
기술사업화지원사업 145
농생명산업기술개발 146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148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148
인삼신품종및대량증식기술개발 · 보급 150
목재생산기반조성 150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50
첨단온실신축지원 152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153
수출인프라강화 153
단기소득임산물 소득기반정비 및 유통구조개선 153

KREI

01 축산 경쟁력 제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축사 및 축사시설에 대한 개선, 시설 자금 지원 • 축사시설 : 축사 내부의 시설(급이 · 급수 · 전기 · 착유 · 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 사료배합기, 환기 · 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지원 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2%,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지원 한도	축종별 지원 한도액 상이(하단 사업시행 내용 참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198,068	610,625	540,625	466,300	1,608,144
• 보조	59,011	103,500	82,250	63,200	242,411
• 융자	98,244	172,500	133,750	106,000	404,685
• 이차보전(융자)	–	212,500	212,500	212,500	637,500
• 자부담	40,813	122,125	108,125	84,600	323,548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4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한우	한우사업단 소속 농가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준전업~전업농가, 기업농
모든 번식전문농장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개별 종축장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한센인 정착촌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젖소육성우목장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지원대상

축사시설	축사내부의 시설(급이 · 급수 · 전기 · 착유 · 환기 시설 등)
축산시설	방역시설(사람 · 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 · 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등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방역 · 급수 · 전기 · 착유 · 발전 · 환기 등) 및 건축물 등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무허가축사(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받은 부분에 한하여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나.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2%,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 원) 보조+융자(준전업~전업농) 상한액	보조+융자(준전업~전업농) 대상농가(축사면적)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이차보전(기업농) 대상농가(축사면적)
한(육)우		260천 원/㎡	300	110~1,050㎡	400	1,050㎡~
양돈		660천 원/㎡	1,250	265~2,400㎡	5,000	2,400㎡~
산란계(산란중추 포함)		720천 원/㎡	1,150	460~4,140㎡	5,000	4,140㎡~
육계(토종닭 포함)		360천 원/㎡	850	460~4,140㎡	3,000	4,140㎡~
양계	육용종계(토종종계 포함)	450천 원/㎡	1,150	915~8,250㎡	3,000	8,250㎡~
부화장	육용종계용	1,500천 원/㎡	1,350	1회 입란규모 100~900천 개	3,000	1회 입란규모 900천 개~
부화장	토종종계용	1,500천 원/㎡	225	1회 입란규모 16~150천 개	3,000	1회 입란규모 150천 개~
오리	육용오리	360천 원/㎡	800	410~3,690㎡	3,000	3,690㎡~
오리	종오리	450천 원/㎡	1,100	555~4,995㎡	5,000	4,995㎡~
부화장		1,500천 원/㎡	1,350	1회 입란규모 33~300천 개	3,000	1회 입란규모 300천 개~
낙농		260천 원/㎡	400	170~1,920㎡	500	1,920㎡~
꿀벌		180천 원/㎡	220	30~300군 미만	700	300군 이상
사슴(엘크)		180천 원/㎡	220	140~1,350㎡ (200~1,840㎡)	700	1,350㎡ 이상(1,840㎡ 이상)
양(흑염소 등)		180천 원/㎡	220	66~600㎡	700	600㎡~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시행단계	자금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등
시 · 군 · 구 축산담당부서, 한우사업단에 신청서 제출	시공업체 선정 · 착공 → 사업완료신고 · 사업비 신청 → 증빙자료 보관	시 · 군 · 구,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쇠고기생산성 향상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FTA, DD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
지원 내용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을 통해 쇠고기의 생산성 향상 도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기초한우사업단에 대하여 초음파진단료 지원
지원 조건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 한도	지원한도액 기준 : 21,000원/1회/두 - 국고보조 : 6,300원, 지방비 : 6,300원, 자부담 : 8,400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음파 진단료 지원	9,600	8,580	7,517	5,376	5,376
• 국고	4,000	2,980	2,533	1,613	1,613
• 지방비	-	-	2,136	1,613	1,613
• 자부담	5,600	5,600	2,848	2,150	2,150

* 상세 :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72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기초한우사업단

나. 지원대상

• 기초한우사업단(농림축산식품부 인증)

• 기초한우사업단 참여농가의 거세 비육우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가입한 후 초음파진단 관련자료 제출과 분석정보를 제공한 기초한우사업단에 지원
-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생후 21~29개월령된 거세 비육우에 대하여 2~3개월 간격으로 2회 초음파 진단한 영상자료와 관련자료 전송
- 초음파 진단한 결과와 효율적인 사양관리정보를 제공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초한우사업단에 대하여 초음파진단료 지원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정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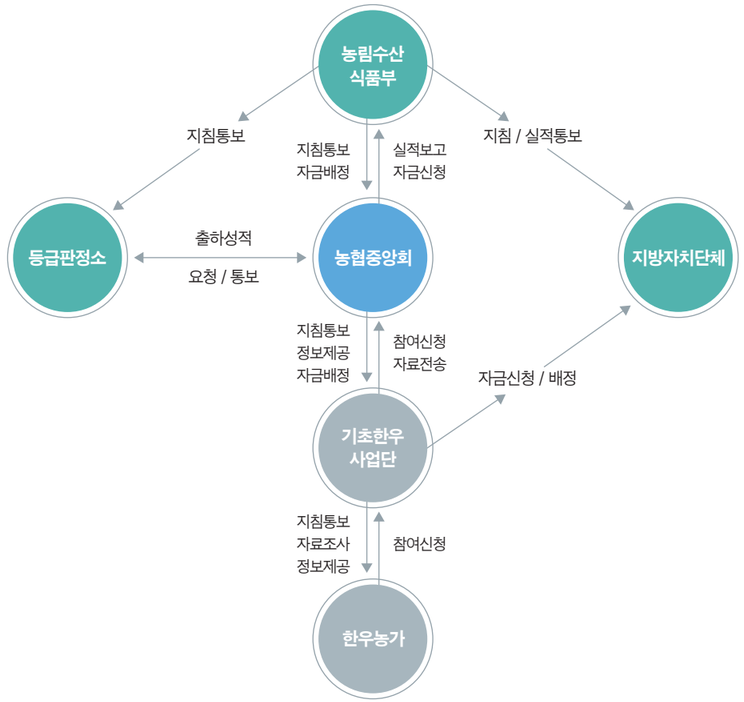
• 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량 : 년간 256천두(128천두*2회 초음파진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21,000원/1회/두
  - 국고보조 : 6,300원, 지방비 : 6,300원, 자부담 : 8,400원
- 지원한도액 범위 : 생후 21~29개월령 한우에 대하여 2~3개월 간격 진단 2회 한함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 · 유통을 선도할 핵심 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지원 내용	• 브랜드 운영지원 : 생산지원(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 사료통일비, 위탁사육비 등), 브랜드 운영(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사료구입자금, 시설 개 · 보수자금, 브랜드 개발 · 마케팅 · 홍보비 등) • 브랜드 판매시설 : 신규건축, 기존건물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 이내)
지원 조건	•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 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 · 축협조합 3%), 3년 거치 일시상환 • 브랜드 판매시설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 · 축협조합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지원 한도	•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브랜드 판매시설 : 융자 70%(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3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42,839	137,125	134,662	134,662
• 융자	113,100 (15,000)	109,100 (15,000)	109,100 (15,000)	109,100 (15,000)
• 자부담	29,739	28,025	27,472	27,472
브랜드 운영지원	131,125	131,125	129,262	129,262
• 융자	104,900 (15,000)	104,900 (15,000)	103,410 (15,000)	103,410 (15,000)
• 자부담	26,225	26,225	25,852	25,852
브랜드 판매시설	11,714	6,000	5,400	5,400
• 융자	8,200	4,200	3,780	3,780
• 자부담	3,514	1,800	1,620	1,620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5-①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 추진경영체(농 · 축협, 영농법인 등)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 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 경영체가 운영)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 구입 자금.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2)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 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다.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1)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2) 브랜드 판매시설 : 융자 70%(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30%

• 농 · 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 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 원 범위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자금에 한하여 직접지원(참여조합 연대보증)

• 농 · 축합조합 이외의 경영체 : 50억 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 원 이내

축산계열화 사업 (가축계열화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 · 가공 · 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지원 내용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 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 · 장비, 계열화 사육비 등 – 닭, 오리, 염소 계열화사업자
지원 조건	• 사육 · 가공 · 유통시설 : 연리 2~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계열화사육비 : 연리 2~4%, 2년이내 상환(총 사업비의 50%이내) • 인센티브 자금(운영자금) : 연리 0~1%, 2년이내 상환
지원 한도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하단 사업시행 내용 참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10,000	9,200	9,200	28,410	28,410
융자	10,000	9,200	9,200	28,410	28,410
• 시설 및 운영비	10,000	9,200	9,200	19,410	19,410
• 모범사업사 인센티브	–	–	–	9,000	9,00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5-②번 사업(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內 축산계열화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1) 사업대상자 : 닭, 오리, 염소 계열화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자

• 제한사항

– 계약사육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농가참여가 50% 이하인 계열화 사업자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계열화 사업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이 30%이상인 계열화 사업체

– 표준계약서 미활용 계열화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농 · 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자(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원)로 지정된 계열화사업자

– 산란계, 염소 등 신규 계열화사업자

–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평가 참여 사업자)

–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열화사업자

3) 지원대상 : 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 사업

나. 기타내용

1)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 · 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2)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기금융자율 · 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닭 · 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 · 새끼오리를 생산 · 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 · 종오리장과 부화장 (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3) 지원한도액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4) 준수 사항

•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는 계열화사업자(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급 과잉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입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사육농가의 동의서를 받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조건	비고
❶ 계열화사업 주체 사육시설	• 계열화사업 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종축장, 부화장)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❷ 가공시설 (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 도축 · 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도계(압)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관련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2~4%(영농법인 등 2%, 농 · 축협 3%, 일반기업 4%)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❸ 유통시설	•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 장비 등		
❹ 축산계열화 시스템 구축 (ICT 융복합 지원)	• 사료 · 육종 · 사육 · 도축 · 가공관리 등 계열화시스템 구축 지원 • RFID/USN을 활용한 축산농가 사육환경, 급이, 선별 등 사육관리 지원 • RFID를 활용한 생산 · 유통 · 판매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		
❺ 계열화사육비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화사업 주체 등 • 자축구입비,사료비,약품비,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2~4%(영농법인 등 2%, 농 · 축협 3%, 일반기업 4%)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❻ 인센티브 자금 (운영자금)	• 자축구입비,사료비,약품비,위탁사육수수료 등	– 연리 0~1% – 2년이내 상환	별도지침 시달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지원 내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지원 조건	융자 100%(2년 일시상환, 3%)
지원 한도	양돈 4,000만 원, 한육우 · 낙농 · 양계 · 오리 3,000만 원, 기타 1,000만 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170,000	500,000	300,000	300,000	300,000

* 상세 : 2013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 계획(2013년 2월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업시행 내용

가.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 꿩, 타조, 꿀벌

※ 꿀벌은 꿀벌전용사료 또는 꿀벌기능성사료에 한함

나. 지원조건 : 융자 100% (2년 일시상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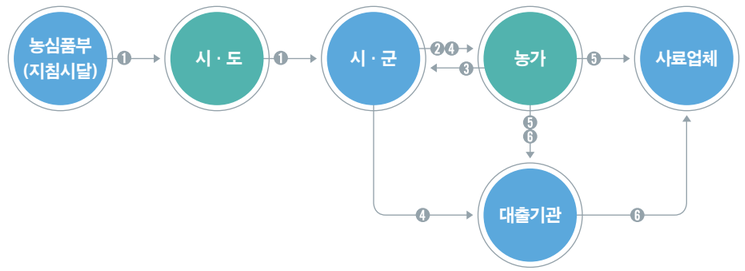
다.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지원한도 : 양돈 4,000만 원, 한육우 · 낙농 · 양계 · 오리 3,000만 원, 기타 1,000만 원

• 지원단가 : 한육우 300천 원, 낙농 650천 원, 양돈 70천 원, 양계 · 오리 4천 원

※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 6개월치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❶ 시 · 도별, 시 · 군별 예산배정
❷ 추진일정, 지원한도액 등 통보
❸ 사업신청
❹ 지원대상자 선정 · 통보
❺ 대출신청 및 사료 구매계약 체결
❻ 대출약정 체결 및 융자자금 입금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 · 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 · 장비 및 시설비 등
신청 자격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 · 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 조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지원 한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단 사업시행 내용 참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이후
합계	349,313	97,143	101,806	100,914	101,714
• 보조	-	-	786	200	1,000
• 융자	346,471	95,000	99,214	99,000	99,000
• 자부담	2,842	2,143	1,806	1,714	1,714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0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 · 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1)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신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자금의 용도

1)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 · 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2)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다.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1)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2)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주관기관 : 관할 지자체, 사료관련단체
(농협중앙회,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시행단계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보고
(자금집행, 원료구매 실적)

▶

자금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

이행점검

1억이상의 공사는 주관기관의 협조하에
계약을 통하여 사업 추진

축산물도축 가공업체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의 위생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 · 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HACCP을 인증받아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 · 가공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 도축장시설현대화 : 도축 · 가공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건축 · 시설 비용 • 도축장시설보완 : HACCP 시설, 오 · 폐수 처리시설, 도계라인 증설 등의 개보수 비용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등 • 계란가공장 · 집하장 및 등급시설 : 건축물, 운반 · 보관시설, 계란 인쇄기 등 • 유제품개발 · 생산시설 : 설치비용 및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제반비용 • 도축장 운영자금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공판장 및 일반도축장의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계란 수집 · 판매 · 시설관리비 등 운영자금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원유 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조건	사업 형태별 지원 조건 상이(하단 사업시행 내용 참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 상세 : 200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79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사 업 명	❶ 도축장시설현대화	❷ 도축장시설보완
사업대상자	도축장(소 · 돼지)을 통폐합하여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자	기존 도축장(소 · 돼지 · 닭 · 오리) 영업자 등
지원 자격	〈 도축장 통폐합 수 〉 ❶ 연간 도축실적이 35만 마리(소 1마리=돼지 10마리) 이상 도축장인 경우는 2개소 이상 통폐합 ❷ 연간 도축실적의 합이 70만 마리 이상인 경우 3개소 이상 통폐합 ❸ 위의 ❶또는 ❷에 해당하지 않으면 4개소 이상 통폐합 〈 통합도축장 선정기준 〉 – 시설구조, 경영관리 등에 관한 선정기준을 정하여 별도 통보	• 소 · 돼지 도축장 :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도축장 • 닭 · 오리 도축장 : '13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기타가축 : 양(염소 포함)사슴 · 토끼 등을 도축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려는 영업자
지원 대상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도축 · 가공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부분육 상장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	•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위한 HACCP 시설 등 – HACCP시설, CO2기절시설, 공기냉각(Air Chilling)시설, 식용 부산물 및 혈액 위생처리 시설, 가축 자동몰이 시설, 지육 현수 운반차량 등 • 오폐수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혈분제조시설 등)
지원 형태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융자 70%, 자부담 30% • 도매시장 기능설치 : 융자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지원 한도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사 업 명	❸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❹ 계란가공장 · 집하장 및 등급시설
사업대상자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성판매가공업 영업자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 축협 · 영농조합법인, 계란 상인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
지원 자격	• 식육포장처리업체 : 거점도축장 부지 내에 식육포장처리장을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시설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가공업체 : 식육가공장(한우부산물가공장 등 포함)을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시설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식육가공품을 직판하는 영업장을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시설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 하려는 자	• 계란가공장 · 집하장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 축협 · 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 냉장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저온창고 등 시설 · 장비 설치시 우선지원 • 계란등급시설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
지원 대상	• 기존업체 : 건물 개보수비, 가공 · 저장시설 등 • 신규업체 :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 계란 가공 · 집하에 필요한 건축물 등 시설 – 건축물, 운반 · 보관시설, 각종 기계 · 장비(부지매입비 제외) • 계란등급시설 – 계란인쇄기, 포장 · 저장 · 운반시설 등
지원 형태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지원 한도	영업장 운영현황, HACCP 적용계획 등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사 업 명	❺ 유제품개발 · 생산시설	❻ 도축장 운영자금
사업대상자	유업체, 유가공조합, 낙농관련 협동조합, 목장형유가공장	소 · 돼지 · 닭 도축업 영업자
지원 자격	• 유제품 개발 ·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유업체, 유가공조합, 목장형유가공장 • HACCP 인증을 위해 집유장 설비를 보완하려는 유업체, 낙농관련 협동조합 ※ 유제품 수출을 위한 제품개발 및 생산시설 우선 지원	• 소 · 돼지 도축장 :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된 도축장 • 닭 도축장 : '13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영업자 ※ '15년부터는 위의 요건 외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도축장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예정
지원 대상	유제품 개발 · 생산시설 설치비용,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등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일반도축장 :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공통사항 : 당해연도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지원 형태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 100%, 연리 0~3%, 1년 거치 일시상환 – 거점도축장(소 · 돼지) 및 도축장 HACCP 상위등급 업체는 0%, 중위등급 3% 금리지원
지원 한도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거점도축장 : 50억 원 이내 • 일반도축장 : 10억 원 이내

사 업 명	❼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❽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대상자	오리 도축업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지원 자격	• '13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 등급 도축장 영업자 ※ '15년부터는 위의 요건 외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도축장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예정	• HACCP 운용중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9)에 따라 선정된 거점도축장과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원료구매자금 및 HACCP 운용비용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지원 형태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 한도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식육포장처리업 : 전년도 지원액,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거점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액 결정 • 공통사항 -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2년 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가공업체는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90%까지 지원(연차적으로 지원 축소)

사 업 명	❾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❿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대상자	계란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낙농관련 협동조합
지원 자격	• 계란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 냉장유통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우선지원하며, 연간 냉장 저장 및 운송 물량 관련 증빙서류 또는 연간 등급판정물량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또는 낙농관련 협동조합 우선 지원 - 단,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시행 이전에는 동 제도 참여를 약정 시 우선 지원
지원 대상	계란등급시설 운영(수집 · 판매 · 시설관리비)에 소요되는 자금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 유가공조합 또는 낙농관련 협동조합의 운영자금
지원 형태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 한도	1개소 당 최대 9억 원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농식품시설 현대화 (축산물열처리 가공장)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수출국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부합한 열처리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양돈산업 안정화 도모
지원 내용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장(10개소)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에 융자 지원
지원 조건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금리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3~4%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3% • 대출기한 :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식품산업진흥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농식품시설현대화	44,800	36,300	36,300	15,300	15,300
• 융자	44,800	36,300	36,300	15,300	15,300

* 상세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1번 사업(식품 · 외식종합자금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 ·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단,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제외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등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 소규모 식품제조 · 가공업체(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 · 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를 창업하고자하는 농업인(대표자가 농업인인 업체 포함)에 한해 지원

다. 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장의 건축 · 증설 · 개보수 등의 시설자금(단, 부지매입비 제외)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대출금리 : 3~4%
  - 일반업체는 4%,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3%
- 대출기한 :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상환), 운영자금(2년이내)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의무량 : 시설완료 및 인증취득

※ 소규모 식품제조 · 가공 창업자금은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25%이상 이어야 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식품시설현대화(축산물열처리가공장) : 50억 원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 공고 · 홍보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대상자)	연 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 *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은 필요시 배정 가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하여 사업이행 상황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 내용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 지원 - 영업보험료(보험료+운영비) 50% - 사업시행주체 : 농협손해보험 LIG컨소시엄
지원 조건	보험료 보조 50%, 자부담 5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04,590	71,470	84,390	105,754
◦ 보조	249,588	35,735	42,195	52,877
◦ 자부담	255,002	35,735	42,195	52,877

* 상세 : 2014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가 판매하는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나. 지원대상 및 요건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다. 지원형태 : 총 보험료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이 납입하는 총보험료의 50% 보조

마.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총 보험료 : 순 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 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농업인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운영비(부가보험료)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재해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바.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대리점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축재해보험 판매 · 인수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타

•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구 분	소			돼 지	말	가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 (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소	주계약	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 수해 설해등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 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 하여야 하는 경우 • 소 도난에 의한 손해	
	특약	종모우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소도체결함 보상	•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돼지	주계약	돼지	• 풍 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특약	질병위험 보장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축산휴지 위험보장	• 풍 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전기적장치 위험담보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폭염재해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협정보험 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 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잔존물처리 비용	•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지원 ('13년도 중 시행예정)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말	주계약	경주마 육성마 종빈마 종모마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단, 경주마는 가입금액 70%까지 보상
	특약	말운송 위험담보	• 말운송 중 발생되는 주계약 보상사고	
		씨수말 번식 첫해담보	• 종모마(수컷)의 번식장애 보상	
가금	주계약	모든 가금	• 풍 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담보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폭염재해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협정보험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 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잔존물 처리비용	•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지원 ('13년도 중 시행예정)	
기타 가축	주계약	사슴,양,꿀벌, 토 끼,오소리	• 풍 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사슴,양,오소리: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꿀벌, 토끼는 95%)
	특약	사망 긴급도축 확장보장 (사슴, 양, 오소리)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 수해 설해등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 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 야 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축사	특약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 풍수재, 수재, 설해: 50만 원 차감 후 보상
	실화대물 배상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원유생산비 절감우수조합 지원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원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낙농 관련조합을 대상으로 육성우목장 운영실적, 국내산 조사료 구매 · 공급, 젖소 경제수명 및 우유품질, 농가 교육실적 등 생산비 절감 노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지원
지원 내용	낙농관련조합 대상 운영자금 지원
지원 조건	융자 100% (연이율 0~1%, 2년거치 일시상환)
지원 한도	매년 2개소 (50억 원/개소)
관할 부처	농협중앙회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 (2014년 10월 발표)

가축질병공제 시범사업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2016년)

주요 내용	• 정부 주도의 가축방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가 중심의 자율적인 가축방역 활성화 지원 • 민간수의사를 활용한 축산농가 주기 방문, 예찰 · 진료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제어
지원 내용	지역(시 · 도)별로 가축질병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산하에 거점 산업동물 진료소를 개설하여 축산농가 방문 · 예찰 · 진료 등 방역사업 수행
지원 조건	보조(진료비 등 필요자금의 50%는 농가 공제납부금, 50%는 보조지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 (2014년 10월 발표)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 (식품컨설팅)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식육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준 운영 · 관리 매뉴얼 제작비와 컨설팅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
지원 내용	표준매뉴얼 개발 3억 1,500만 원, 경영컨설팅 20개소 4,200만 원
지원 조건	(2015년) 매뉴얼 제작비 보조 100%, (2015년~2019년) 컨설팅비 보조 50%
관할 부처	한국육가공협회, 축산기업중앙회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 (2014년 10월 발표)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국내 축산물을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지원 조건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지원 한도	개소당 6억 원(보조 3억, 융자 3억) 이내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	–	–	20,000	20,000
• 국고	–	–	–	6,000	6,000
• 지방비	–	–	–	–	–
• 융자	–	–	–	6,000	6,000
• 자부담	–	–	–	8,000	8,000

* 상세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서 67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다.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 원(보조 3억, 융자 3억) 이내

2) 지원규모

- 연 20개소 (한우 15개소, 돼지 4개소, 육우 1개소씩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신청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 · 냉장숙성실 · 냉동실 · 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지원 희망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부지매입 · 건물매입 · 건물임차 관련 계획서, 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시행 및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신청서류 제출 사업희망자→시 · 도	시공업체 선정 · 착공, 사업완료 신고 · 사업비 신청	• 사업대상자 : 사후관리 및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 시 · 도 : 분기별 1회 현지 점검 및 지도

혈액자원화 시설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혈액을 수집 · 가공 · 판매할 수 있도록 혈액 자원화 시설 지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도축업체 대상 시설자금 지원
지원 조건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지원 한도	1개소 (230억 원/개소)
주관 기관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2014년 10월 발표)

축산물 통계관리 시스템구축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 효율적인 낙농통계 관리로 우유수급 상황의 정확한 분석 · 예측 및 낙농물품 공동구매로 낙농가의 우유생산비 절감 촉진 •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 가금산물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및 합리적 기준 가격 설정 체계 구축
지원 내용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 낙농관련 통계관리 시스템 운영비용 및 공동구매 홈페이지 구축 •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가금산물 가격 조사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추진
지원 조건	국고보조 100%
사업 규모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1식, 인력운영 3인 •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 시스템 구축 1식, 연구용역 1식
주관 기관	낙농진흥회, 축산물품질평가원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2014년 10월 발표)

축산물 수출원료 구매자금지원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축산물(부산물 포함) 수출업체에 대해 원료구매 자금 융자 지원
지원 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지원 한도	매년 260억 원 수준 융자 지원
관할 부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2014년 10월 발표)

축산자조금 지원사업 (한우교육 · 컨설팅포함)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지원 내용	•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등
지원 조건	국고보조(농가거출금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한도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275,622	42,792	42,792	38,512	45,986	45,986
• 국고	130,886	21,396	21,396	19,256	22,993	22,993
• 자부담	144,736	21,396	21,396	19,256	22,993	22,993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6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나. 자조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형태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라.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녹용, 꿀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단계	사업승인 및 시행단계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성과측정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축산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서 승인(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축산단체)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 농협중앙회	자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 공시 ·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
지원 내용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 지급
지원 조건	보조 100%
지원 한도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 차등 지급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담당 기관	지역축협조합,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지자체)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2016년 이후
송아지생산안정	212,496	24,598	24,598	24,598	24,598
• 국고	128,258	4,286	4,286	4,286	4,286
• 지방비	47,539	10,156	10,156	10,156	10,156
• 융자	–	–	–	–	–
• 자부담	47,895	10,156	10,156	10,156	10,156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3번 사업(축산물수급관리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지역 : 전국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다.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 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2014년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두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 원)	400	300	100	0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사업안내
- 안정제사업내용
- 안정기준가격
- 계약자부담금

▶

계약체결
계약신청기간 6개월,
계약자부담금납부

▶

송아지생산신고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 생후 30일이내
사업시행기관에 신고

▶

송아지 생산 확인
사업시행기관은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 확인 : 이력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확인 및 전산 등록

▶

보전금 지급
생후 6~7개월령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 기준가격일때

원유수급안정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원유의 생산과 소비 불균형에 따른 낙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조절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지원 내용	진흥회가 낙농가로부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원유 중 유업체와의 계약물량을 초과한 잉여원유 처리에 소요되는 차액 보전
지원 조건	국비보조 100%(민간위탁)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낙농진흥회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558,737	25,000	12,000	12,000	6,000	36,000
• 보조	558,737	25,000	12,000	12,000	6,000	36,000
원유수급조절	558,207	25,000	12,000	12,000	6,000	36,000
• 보조	558,207	25,000	12,000	12,000	6,000	36,000
집유체계개편	530	–	–	–	–	–
• 보조	530	–	–	–	–	–

* 예산액은 당초계획, 2015년 이후는 중기수치임

* 상세 :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축산물수급관리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진흥회를 통하여 유업체에 원유를 납유하는 낙농가
- 진흥회와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

나. 지원자금의 용도

- 진흥회가 낙농가로부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원유 중 유업체와의 계약물량을 초과한 잉여원유 처리에 소요되는 차액 보전
  - 진흥회는 소속농가의 생산량 중 유업체에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 유제품에 경쟁할 수 있도록 치즈, 분유, 연유, 아이스크림 제조용으로 국제경쟁이 가능한 가격으로 판매
  - 이때 발생되는 손실(농가 원유대 차액)을 수급조절자금으로 보전

다.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축발기금
- 지원조건 : 국비 보조 100%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사항 없음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수급조절계획보고	전년 11월	사업수행주체	낙농진흥회가 익년도 수급조절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보고
수급조절계획 확정	1월중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수급조절계획을 기초로 사업계획 확정
자금배정요청	1월중	사업수행주체	낙농진흥회는 분기별 수급조절 소요예산 요청
자금배정	2월중	농식품부	수급조절예산 배정 통지
잉여원유 사후관리	8월중	사업수행주체	낙농진흥회가 공급한 잉여원유에 대한 용도별 사용여부 현지 실사(연2회)
수급조절사업 결산 회계감사	차년 1월	사업수행주체	외부 회계법인에 수급조절사업 회계감사 실시
결산보고 및 정산	차년 2월	사업수행주체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사업결산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보고 및 사업비 정산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원유생산량이 부족한 시기에 생산량 증대 유도를 위하여 낙농가에게 일정부분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서 낙농가 경영안정 및 수급 계절편차 완화 도모 • 국산유제품의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수급 계절편차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원유를 가공유제품 생산에 사용한 집유주체에 지원
지원 내용	• 낙농가 : 6~12월 사이에 쿼터(버퍼쿼터 포함)를 초과하여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본쿼터의 10% 이내) • 집유주체 : 1~5월 사이에 소속 낙농가로부터 구입한 기본쿼터 이내 물량과 타 집유주체로부터 구입한 정상가격 물량 중 가공유제품 생산에 사용한 물량에 대하여 지원
지원 조건	국고보조 100%
지원 한도	우유생산비와 가공원료유 공급가격과의 차액(223원/리터) 지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가공원료유지원	7,200	10,000	6,000	30,000
• 보조	7,200	10,000	6,000	30,000

* 2015년 이후는 중기 수치임(연간 10,000백만 원 투입)

* 상세 :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축산물수급관리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사)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소속 낙농가

• 진흥회와 '원유수급안정 협약서'를 체결한 집유주체(유가공업체, 낙농조합) 및 소속 낙농가

1) 낙농가

– 진흥회 '쿼터이력관리 시스템'에 매월 쿼터(기본쿼터, 버퍼쿼터) 변동사항을 등록

– 2014년 5월 이후 등록 낙농가는 2015년 사업대상자에 포함

2) 집유주체

– 진흥회와 '원유수급안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적정 생산량 유지 및 사후관리 점검자료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 집유주체

– 가공유제품 임가공 또는 생산 실적이 없는 집유주체,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내용

1) 낙농가 : 6~12월 사이에 쿼터(버퍼쿼터 포함)를 초과하여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본쿼터의 10% 이내)

2) 집유주체 : 1~5월 사이에 소속 낙농가로부터 구입한 기본쿼터 이내 물량과 타 집유주체로부터 구입한 정상가격 물량 중 가공유제품 생산에 사용한 물량에 대하여 지원

– 신선유제품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 가공유제품 : 치즈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농축유류 등

다.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지원시기
  - 낙농가 : 매월 쿼터(기본쿼터, 버퍼쿼터) 및 생산실적을 다음월 15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고, 진흥회는 연간총량제 실시 및 미실시 농가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2월 이내에 지급
  - 집유주체 : 가공유제품 매월 생산실적을 진흥회에 제출하고, 진흥회는 사업대상 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급

라. 지원기준

1) 지원단가 : 우유생산비와 가공원료유 공급가격과의 차액(223원/리터) 지원

- 우유생산비 : 784원/리터(통계청발표 2012년 우유생산비 적용)
- 가공원료유 공급가격(2011~2013년 탈지분유 국제경쟁가격) : 561원/리터
  - 탈지분유 국제경쟁가격은 진흥회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산출한 가격
  - 낙농가가 유가공업체로부터 받는 쿼터 초과 원유대가 561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단가는 우유생산비와 지급받는 초과원유대 차액을 적용

2) 낙농가 : 2014년 농가별 지원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기간 중 월별 생산실적에 따라 예산범위(20억 원) 내에서 지원

- 기본쿼터 총량 단위로 유업체에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조합은 해당 유업체의 단일 농가로 간주하여 지원물량 산출(낙농가별 기본쿼터의 합 = 낙농조합 기본쿼터 총량)

〈지원한도 산출식〉

$$\text{농가별 지원 한도액} = \text{소속 집유주체 기본쿼터의 10\%(2010.12월 기준)} \times \frac{\text{2014.6 – 12월 농가별 기본쿼터량}}{\text{2014.6 – 12월 소속집유주체가 기본쿼터 총량}} \times$$

3) 집유주체 : 지원사업 대상기간 중 집유주체별 지원한도 물량 내에서 가공 유제품 생산실적에 따라 예산범위(40억 원) 내에서 지원

- 타 집유주체 중 낙농조합으로부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물량 산출 시에는 해당 낙농조합의 소속 낙농가별 기본쿼터량 이내 생산량의 합산량 범위 내에서 인정
  - 다수의 집유주체에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조합의 경우 "낙농가별 기본쿼터량 이내 생산량의 합산량을 집유주체별 공급실적에 따라 배분"하여 집유주체별 정상가격 구입물량 산출

〈지원한도 산출식〉

집유주체별 지원한도 = 개별업체 지원대상량1) × 지원단가

주1) 개별집유주체별 지원대상량 = 2010년 기준 집유주체별 가공원료유 지원가능량 조정계수1×조정계수2×조정계수3

- (조정계수1) '13. 6~'14. 5월까지 집유주체별 원유조달물량 합계 중 진흥회로부터 원유를 조달한 비율에 따라 조정계수 적용
  * 조정계수 : 50%이상은 1.0, 50%미만은 0.8, 0%는 0.4 적용
- (조정계수2) 음용유 소비확대를 위해 진흥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발전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조정계수 적용
  * 조정계수 : 학교우유급식 발전사업 참여는 1.0, 미참여는 0.9 적용
- (조정계수3) '10.12월 집유주체별 기본쿼터 총량 대비 '13.12월 기본쿼터 총량의 증가비율에 따라 조정계수 적용 (기본쿼터량 감소 시에는 1.0 적용)
  * 조정계수 : 1.0 – 집유주체별 '10년 대비 '13년 기본쿼터량 증가율

축산물이력제 (쇠고기이력 추적제)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사육단계부터 도축 · 포장처리 · 판매과정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 내용	• 단계별 지원 – 사육단계 : 출생 신고,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등 – 도축, 가공, 판매 단계 : 업체에서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관리 • 이력사업의 운영 – 농협중앙회 : 귀표의 공급, 사육단계 교육 및 현장 지도 · 점검 등 – 축산물품질평가원 : 개체식별대장관리, DNA동일성 검사 등
지원 조건	보조(지자체 보조 50%, 민간보조 10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축산물이력제	15,881	16,294	16,398	16,398	16,398	16,398

* 상세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 및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內(쇠고기이력추적표시제)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사육 · 도축 · 가공 · 판매단계에 HACCP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일관된 축산물 HACCP 적용 식품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 내용	축산농가 및 브랜드경영체 등에 축산물 전문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지원 조건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지원 한도	개소당 8백만 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및 재원출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	2,640	2,640	2,640	2,640	2,640	2,640

* 상세 : 2011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76번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국산 조사료 생산 ·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 · 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 유통기반 확충 도모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조사료용 기계 · 장비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가공 · 유통시설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지원 조건	보조, 융자, 자부담(사업 형태별 지원 조건 상이(하단 사업시행 내용 참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까지
합계	123,964	153,984	157,707	136,291	870,393
• 보조	91,346	106,697	110,125	94,309	657,175
• 융자	32,618	47,287	47,582	41,982	213,218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59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공통사항〉

1) 사업대상자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 · 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 · 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 ·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경영체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 · 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 · 축 · 낙협, 한우조합 등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볏짚비닐지원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염소, 산양, 면양, 사슴)와 축산물여업자(집유업에 한함)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 · 영업자

– HACCP 컨설팅 사업자금 지원은 축산농가 · 영업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원

2) 지원자격

•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 · 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메추리 포함) : 축산업(닭, 메추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염소 · 산양 · 면양 및 사슴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400두 이상인 농가(사슴은 200두 이상인 농가)

– 부화장 : 축산업을 등록하고, 1회 입란 능력이 30만이상인 부화장

– 집유업 : 제한 없음

나. 지원자금의 용도

•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영업자 및 종업원등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 · 운용

– 개별 농장 · 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 · 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다.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개소당 800만 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컨설팅 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성과측정
사업신청서 제출 →시 · 군 · 구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컨설팅 업체 선정(시 · 도), 농업인 – 컨설팅 업체간 계약 체결 및 시행	계약체결 현황에 따라 보조금 신청(시 · 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 결과 보고 (분기별 1회, 시 · 도)

사 업 명	❶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대상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지원 자격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조사료 사일리지 및 건초 사업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 · 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 사전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및 건초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지원 형태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지원 한도	사일리지 60천 원/톤(품질검사 시범 적용대상 시 · 군은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 (건초의 경우 수분함량 보정계수 2.4를 건초 중량에 적용하여 산정) * 건초 1톤은 사일리지 중량으로 환산할 경우 2.4톤에 해당됨(건초 1톤×보정계수 2.4)

사 업 명	❷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사업 대상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지원 자격	•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1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단,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 · 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중앙회,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 · 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 ·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TMR업체는 농 · 축 · 낙협의 TMR업체, 한국사료협회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업체 또는 시 · 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지원 대상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 형태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지원 한도	구분 / 대 상 / 지원조건 / 지원기준 장거리 운송비 / 단체, 경영체 등 / 타 시 · 군 100㎞ 이상 유통 / 실운송비의 40%(30원/kg 한도) 생산 구축비 / 단체, 경영체 등 /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 · 군 유통 / 5천 원/톤 유통 촉진비 / TMR 업체 /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 10천 원/톤

사 업 명	❸ 조사료용 기계 · 장비 지원
사업 대상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 · 이용하려는 자
지원 자격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 ·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 ·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 · 예취 · 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지원 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 · 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 · 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지원 한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00만 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사 업 명	❹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사업 대상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볏짚 ·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지원 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볏짚비닐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 종자구입비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볏짚(보리짚 제외) 비닐 지원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볏짚을 수거해야 하는 필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	• 종자지원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 볏짚비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볏짚비닐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지원 한도	• 종자구입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 · 축협(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 · 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 · 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볏짚비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 · 공급 가능

사 업 명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지원 자격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 ·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 · 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 목장내 도로 개설 – 초지 · 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용 울타리 설치
지원 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지원 한도	• 초지조성 :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사 업 명	⑥ 가공 · 유통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 · 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 자격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유통센터 :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 · 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지원 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 · 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 · 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 · 장비 및 기타 가공 · 유통센터 설비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가공 · 유통센터 설치 · 운영을 위한 기계 · 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사 업 명	⑥ 가공 · 유통시설 지원
지원 한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 원 이내(총사업비 30억 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보완지원은 개소당 9,000만 원 이내(총사업비 3억 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 원. 다만, TMR 및 유통센타 동시 운영업체는 8억 원까지 지원 가능 – 연간 25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지원

사 업 명	⑦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사업 대상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신규면적 10%이상 확보하고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지원 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 동일 시 · 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 하계 작물별)을 4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특화단지 : 동일 시 · 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 하계 작물별)을 1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지원 대상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 · 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 · 액비, 입모중파종비
지원 형태	• 사일리지 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 · 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 · 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지원 한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억 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자연순환 농산물 및 조사료를 생산 · 공급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지원 내용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전문경영체에 퇴액비로 생산한 농산물 출하선급금,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의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지원
지원 조건	융자 70%(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 자부담 30%
지원 한도	개소당 지원액 : 경영체 규모와 사업실적, 자연순환농업 체계 구축 등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 사업금액의 70% 융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30,000	34,300	34,300	34,300	31,400	44,000
• 융자	24,000	24,000	24,000	24,000	22,000	30,800
• 자부담	6,000	10,300	10,300	10,300	9,400	13,200

* 상세 : 2013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설명자료(축산발전기금 홈페이지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1) 사업대상자

• 지역 농 · 축협,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를 퇴 · 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 · 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할 것

• 퇴 · 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퇴 · 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 퇴 · 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퇴 · 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 조사료 · 퇴비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및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퇴 · 액비 생산 · 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 · 홍보비 등

다.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금액은 융자(70%)와 자부담(30%)을 포함한다.
  – 사업자가 기금 지원액의 143%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사업의무 이행기간 : 1년(1월 ~ 12월말),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

• 지원금액 : 사업금액의 70% 융자

• 지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액 : 경영체 규모와 사업실적, 자연순환농업 체계 구축 등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 자금배정은 사업신청서, 사업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마. 사업의무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

• 사업의무 이행기간 연장 신청 : 자금 지원연도 10월말 기준 사업의무량(자부담)을 연도말까지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될 때 경영체는 11월 15일까지 해당 시도 · 시군을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연장 신청

• 자금용도 변경 신청 : 당초 자금 지원시 제출한 자금용도 사용내역서와 자금 지원연도 10월말 기준 경영체의 자금 집행실적이 연도말까지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붙임1서식) (사업희망자 → 시 · 군) ▶ 사업대상자 제출 (시 · 군 → 시 · 도) ▶

사업대상자추천 (시 · 도 → 농식품부) — 주)시 · 도는 농협지역본부와 협의하여 농식품부에 추천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 ▶

우선순위 및 지원액 추천 (농협중앙회 → 농식품부) ▶ 사업종합심의 (사업심의위원회) ▶

지원대상자 확정 · 통보 (농식품부 → 시 · 도) — 주)시 · 도는 시 · 군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후관리 및 지도 · 점검 실시 (시 · 도 → 사업대상자) — 주)시 · 도는 농협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지도 · 점검 실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가축분뇨처리 시설 · 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 · 액비 ·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지원 내용

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

지원 조건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 (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 액비화	40	30	30	–	
• 에너지화	50	20	20	1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	–	–	

지원 한도

(단위 : 백만 원 / 개소)

구분		돼지	한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퇴 · 액비화		3,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퇴 · 액비화(소규모)		1,500 (1일 30톤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에너지화		7,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		17 (200톤 규모기준, 폭기 · 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 (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 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지)]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판정기		3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14,660	140,814	153,368	134,436	140,436
• 국고	42,244	46,629	45,417	42,708	45,708
• 융자	27,075	38,645	51,521	44,968	46,468
• 지방비	38,841	44,770	45,660	38,990	39,990
• 자부담	6,500	10,770	10,770	7,770	8,27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1번 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개별시설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 돼지 · 닭), 농업법인, 지역 농 · 축협

– 정화 개보수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에 한함(신규농가 제외, 2013년 이전 정화방류시설을 운영중인자 다만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악취저감방지시설 : 악취저감용(축분장 살포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수 있는 농업인, 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 · 축협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가축분뇨처리 시설 · 장비 구입비

• 퇴 · 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 · 통풍식 · 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할수 있는 시설

• 에너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 · 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부대기계 · 장비 : 왕겨분쇄기 · 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 · 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 · 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 · 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정화개보수 :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 · 기계 등 구입 · 설치비(방류유량계(전자식), 전력량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미생물)시설 :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이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 기계 · 장비 등

3) 지원형태 : 국비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4%)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 원/개소)

구분		돼지	한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나. 공동자원화시설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퇴 · 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 · 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일반)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 · 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 · 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소규모) 양돈 5호이상 돈분을 1일 30톤이상 수거하여 퇴액비화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문유통주체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 · 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 · 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 이용 및 퇴 · 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퇴 · 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 · 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장비
• 퇴 · 액비화(소규모) : 가축분뇨 퇴비 · 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 · 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수 있는 시설 · 장비
• 개보수 : 퇴액비 시설 · 기계 · 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3) 지원형태

• 퇴 · 액비화 : 국비보조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에너지화 : 국비보조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4%)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 원/개소)

구분	돼지	한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공동자원화시설					
• 퇴 · 액비화	3,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퇴 · 액비화(소규모)	1,500 (1일 30톤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에너지화	7,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다. 정착촌구조개선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 · 법인체 등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별시설(가.개별시설) 장비 구입비

3) 지원형태 : 국비보조 5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4%)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시설에 준함

라. 액비저장조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시장 · 군수가 구성 ·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 · 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 · 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 · 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 · 유통 경영체]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이 경우 우선 지원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3) 지원형태 : 국비보조 20%, 지방비 50%, 자부담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700만 원(200톤 규모기준, 폭기 · 교반 시설 포함)/개소

마.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전문유통주체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 · 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며, Agrix '가축분뇨 자원화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사후관리 기간내 입력 의무)
• 액비살포비 : 시장 · 군수가 구성 ·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 · 운반 ·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3) 지원형태

• 액비유통센터 : 국비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 국비보조 50%, 지방비 5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액비유통센터 : 2억 원(최초 지원시)/개소
• 액비살포비 : 200천 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바.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시 · 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 · 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장비 구입비용 지원

3) 지원형태 : 국비보조 50%, 지방비 5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액비성분분석기 : 2,400만 원/개소
• 부숙도판정기 : 3,000만 원/개소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성과측정
사업신청서 제출 →시 · 군 · 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시설 · 장비 구입정보 제공 및 시공업체 선정(시 · 도) →시설 설치의 허가 · 신고 및 준공검사 등 (사업자)	사업자금 배정 신청(시 · 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실적 지도 · 점검 실시(반기별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시 · 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가축분뇨 자원화율 점검)

친환경동물 복지직불제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 • 환경보전과 소득유지를 동시에 추구하며,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내용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
지원 조건	국고보조 100%
지원 한도	(유기)3,000만 원/연간, (무항생제)2,000원/연간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친환경동물 복지직불제(국고)	14,000	10,025	16,283	17,257	계속사업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48~②번 사업(친환경농업직불제 內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간만 지급
- 3~5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5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2014.11.1.~2015.10.31.
- 동 기간동안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유기 ·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축종별 지급단가〉

축종	지급 단가	비고
한우	유기 170,000원 / 마리, 무항생제 65,000원 / 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젖소(우유)	유기 50원/ ℓ , 무항생제 10원/ ℓ (우유 1 ℓ 는 1.03kg임)	
돼지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산출서식: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육계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 (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	
오리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오리알	유기 20원/개, 무항생제 2원/개	
메추리알	무항생제 4원/10개 혹은 4원/100g	산출서식: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산양	무항생제 4,584원/두	
산양유	무항생제 34원/ ℓ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액 : (유기) 3,000만 원/연간, (무항생제) 2,000만 원/연간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

• 지급단위 : 천 원(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지침 통지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12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015년 1~2월)	[신청] 축산인 (2015년 3월) [선정]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상 · 하반기 1회씩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사후관리 점검 실시

악취저감 시설지원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저감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 내용	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 4종 이상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 – 미생물 배양후 축산농가, 조합원 등에 축사 세척 및 분뇨처리장 살포용으로 제공
지원 조건	개소당 1억 3,000만 원(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60%)
지원 규모	매년 30개소 내외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2014년 10월 발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1번 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산환경 관리원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관리기구 설립 · 운영
지원 내용	2015년 3월부터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운영비 지원 (직원 20명 내외, 연간 20억 원 지원)
지원 조건	국비 100%
지원 규모	축산환경관리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2014년 10월 발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1번 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가동률 향상 등 가축분뇨 처리효율 제고
지원 내용	공동자원화시설의 액비화시설, 악취방지시설 및 운반 · 살포 장비 등 개보수
지원 조건	개소당 5억 원 내외(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지원 규모	매년 10개소 내외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2014년 10월 발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61번 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친환경축산물 유통활성화 및 직거래지원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2016년)

주요 내용	친환경축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조절 · 가격안정에 기여
지원 내용	생산자단체, 생협, 유통업체 대상 친환경축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지원 조건	융자 80% (연리 3~4%, 1년 일시상환)
지원 규모	(2016년) 5개소, 50억 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 (2014년 10월 발표)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 內 편성 예정

가축방역사업 (시 · 도 가축방역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 ·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인수공통 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지원 내용	시 · 도 가축방역 - 긴급방역비, 예방주사 · 검진 · 기생충 구제, 가축혈청검사 · 병성감정 등 지원 -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비, 전염병 검사실 유지 · 보수비, 시험소 등 방역장비 구입
지원 조건	국비보조, 자부담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천 원)

구분	2013년도 사업비(국비)	2014년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 · 도 가축방역사업	78,313,000	170,958,792	77,049,000	54,408,094	39,501698

* 상세 : 2014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2014년 1월 발표)

사업시행 내용

가. 지원대상

- 긴급방역비 :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돼지열병 청정화 등에 필요한 소독약품 등 방역재료 공급,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발생농가 및 인접지역 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등 공급, 기타 질병 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방약 · 진단킷트 등의 구입과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기자재 공급 지원
- 시 · 도 가축방역사업(지자체) : 예방 · 검진 ·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 가축질병(돼지)모니터링 검사, 소 브루셀라병 채혈 · 보정비 지원, BSE 진단킷트 구입 지원, 시 · 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지원,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 지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 기타 : 공중방역 수의사 교육 및 임관식 여비, 수의사 연수교육비, 산업동물 임상 인터넷 교육 시스템 운영비, 수의사 처방제 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등

나. 지원형태 및 지원액

(단위 : 천 원)

구분	2014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긴급방역비(재료비)	2,003,000	2,003,000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여비	41,000	41,000	
수의사 연수교육 및 워크샵 개최비 등	1,208,000	1,208,000	
예방주사	81,250,226	50,020,393	31,229,833
검진	5,254,188	3,036,307	2,217,881
기생충 구제 등	3,841,100	2,688,100	1,153,000
가축혈청검사 병성감정사업	776,008	776,008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2,100,000	1,050,000	1,050,000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1,750,000	875,000	875,000
소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9,318,400	2,795,520	6,552,880
BSE 진단킷트 구입비	679,000	339,500	339,500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660,000	330,000	330,000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비	2,900,000	1,160,000	1,740,000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3,740,000	1,870,000	1,870,000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 지원	660,000	330,000	330,000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4.000.000	2,000,000	2,000,000
예방약류 구매 조달수수료	268,842	268,842	-
예방약류 구입 유보액 등	1,507,331	1,507,331	-
시험소 등 방역장비 등 구입비	9,500,000	4,750,000	4,750,000

가축위생 방역본부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 · 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 구제역 · AI · 돼지열병 · 닭뉴캣슬병 · 소브루셀라병 등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민간방역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원(농장 시료채취, 농장방역실태점검, 가축사육농가 위치정보 DB 구축 등)
지원 조건	• 민간경상보조 : 국비 100% • 지자체보조 : 국비 60%, 지방비 4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결산	2013계획		2014계획	증 감	%
		당초(A)	수정	(B)	(B-A)	
가축위생방역본부	19,331	20,834	20,834	21,294	460	2.2

* 상세 : 2014년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사업 설명자료(축산발전기금 홈페이지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주요내용

- 농장 시료채취, 농장 방역 실태 점검, 가축 사육 농가 위치정보 DB 구축
- 사업시행주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가축위생방역본부(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가축위생방역본부(지자체보조) 국비 60%, 지방비 40%

나. 기타내용

- 지원 필요성
  -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한 민 · 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통하여 질병 청정화와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 방지 및 유입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가 예찰
  - 농가 자율방역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 질병예찰 및 신고 · 상담 콜센터 운영을 통한 가축질병 신고 및 민원 조기 해결

가축질병대응 (가축질병근절사업)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 ·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 거점 세척 · 소독시설 신규 지원 : 가축질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 조기 종식 • 가금농가 질병관리 신규 지원 : 가금농가별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질병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및 난계대 질병 등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신규 지원 :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50두 미만 소규모 고령(60세 이상)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한육우, 젖소)에 대해 백신접종 지원 • 돼지소모성질병 백신구입비 지원 확대 : 돼지써코바이러스,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지원 조건	거점 세척 · 소독시설 신규 지원 : 국고보조 50% 가금농가 질병관리 신규 지원 : 국고보조 30%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신규 지원 : 국고보조 50% 돼지소모성질병 백신구입비 지원 확대 : 국고보조 50~7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 (2014년 10월 발표)
2014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2014년 1월 발표)

종축장전문화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로 일반가축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전문종축장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조건	• 보조(제주도 축산진흥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전문종축장 : 융자 100%(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연리 3%
지원 한도	전문종돈 · 종계장 50억 원/개소, 전문종오리장 28억 원/개소 이내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단위 : 백만 원)

재정투입계획	구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합계	31,211	11,542	25,000	15,000	3,600
	• 국고보조	300	300	300	300	300
	• 지방비	300	300	300	300	300
	• 융 자	35,775	10,942	24,400	14,400	3,000
	• 자부담	14,976	–	–	–	–

* 상세 :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80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종축업으로 시장 · 군수(시 · 도지사)에게 등록된 법인
  – 축산업 허가제 시행 시 시장 · 군수(시 ·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은 농업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전문종축장
  – 중소규모 종축장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 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 기타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 사업지원 신청 시 신규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예정지역에 대한 부지확보 증명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 · 환기 시설, 온 · 습도 조절 등)
  – 부화장은 제외. 단, 종오리장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운영자금
  – 종축 구입비, 청정화 소요 비용 등 종축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보조(제주도 축산진흥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전문종축장 : 융자 100%(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연리 3%
- 지원기준
  - 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 전문종축장은 시설완료 후 사업계획대로 추진된 경우에 한정하여 시 · 도지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금 상환 시점을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사업기간(시설자금) : 2~3년차 지원(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
  ※ 단 사업이 1년차에 완료시 대상자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개소당 지원단가)
  - 시설자금 : 전문종돈 · 종계장 50억 원/개소, 전문종오리장 28억 원/개소 이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단, 종돈장은 모돈 500두 이상, 종계장은 5만수 이상, 종오리장은 1만수 이상
    ※ 개별 종축장 및 AI센터 시설개선지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시설자금)은 융자금 지원 기준임
  - 총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사업주관기관 :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기금관리기관 : 농협중앙회(축산발전기금사무국)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사업신청(농업인, 1월)
→지원적격자추천 (시장 · 군수, 2월)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농식품부, 2월)

▶

시행 및 자금 배정
토목 ·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체결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자금집행 증빙자료 보관
→시 · 도에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결과 제출

▶

이행점검
사업추진기간부터 완료 후까지 현지점검 실시(시 · 도),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기간 적용

가축개량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 • 주요가축 능력검정을 위한 우량 씨수소선발 및 정액 공급 • 우수 종축 선발을 위한 육종 농가 선정
지원 내용	종축 능력검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 조건	민간경상보조(정액보조), 지자체보조(50%), 기금직접수행
시행 주체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시 · 도, 한국가금학회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및 재원출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축개량사업	41,100	39,700	39,700	39,700	39,700

* 상세 : 2014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설명자료 內 (2014년 5월 발표)

사업시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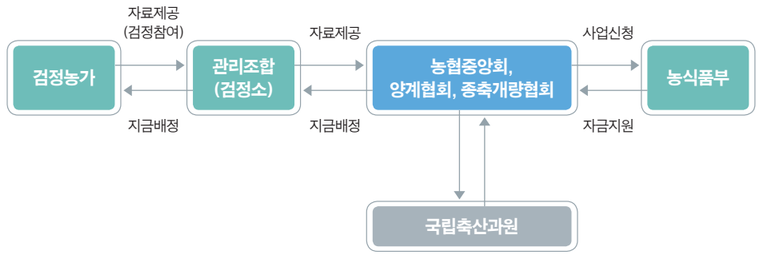
- 세부사업 내역

구분	내용
한우능력검정 (정액생산 · 공급)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 이용하여 우량정액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순종 개량방법에 의한 한우능력향상, 우량 한우 보호 및 순수 혈통 보전
한우암소검정사업	우량 암소 계획교배에 의한 송아지생산과 능력평가에 의한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암소개량 집단 구축
한우육종농가사업	• 한우육종농가 보유암소의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한우 암소 모집단 구축 • 국가단위 능력검정에 공시할 유전능력이 우수한 검정용 수송아지를 확보하여 한우 씨수소의 유전능력 제고 • 한우 씨수소의 우수한 유전자 농가 공급을 통한 육량과 육질에 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한우암소 개량센터운영	• 한우 사육농가에 우수 수정란 공급을 통한 육량과 육질에 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 초우량 한우 암소의 유전자원 확보로 가축개량 증진을 통한 우수한 검정용 수송아지를 확보하여 한우 씨수소의 유전능력 제고 • 능력이 우수한 한우암소의 유전자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한우 우수 수정란 생산 · 공급 체계 구축 • 기관간 수정란 관련 기술 표준화
젖소능력검정 (정액생산 · 공급)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 · 도입, 이용하여 우량정액을 생산 · 공급하고, 순종 개량방법에 의한 젖소 능력향상, 우량 젖소 보호 및 순수 혈통 보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젖소개량에 의한 생산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구분	내용
젖소육종농가사업	• 고능력 수정란 도입 및 청정육종농가 이식을 통한 우수 후보씨수소 생산 확대를 통한 유전자원 자립화 기반 확보 • 한국형 보증씨수소의 신뢰도 제고 및 우수성 입증 • 낙농가의 개량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능력의 보증씨수소 생산으로 국산정액 판매 활성화 및 수출기반 조성
종돈농장검정사업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을 통한 선택지표 제공과 국내산 우수 종돈 선발 · 보급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량v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 종돈 개량 및 종돈 수출
종축등록사업 (한우선형심사)	• 육량과 장수성 및 후대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형질에 대한 개량방향을 설정하여 우수한 개체를 선발 • 유성분분석의 표준화를 통한 자료효율성 및 정확도 증대와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신뢰도 향상 • 선형심사 및 유성분 분석결과를 활용한 개량농가 선발 · 도태 정보 제공
가축개량기술교육	• DDA · FTA에 대응하여 선진화된 가축개량 기술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신기술 습득과 기술력 향상 • 전문화된 농가 지도요원 육성으로 신기술의 보급 효과 극대화 및 내실있는 가축개량사업 추진 • 축산분야 R&D 과제의 사전 발굴 및 추진방향 검토를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 가축개량 체계도



❶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확보(농식품부) ❷ 사업계획수립 · 제출(사업주관기관) ❸ 사업 검토 · 확정(농식품부)

❹ 보조금교부(사업주관기관) ❺ 사업추진(사업주관기관) ❻ 사업비 정산(사업주관기관)

축산물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사업 (식육교육센터)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식육처리 및 가공 등에 대한 위생교육으로 축산물식육처리 기능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식육의 가공 · 판매 종사자에 대한 직무능력 강화로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국민건강 보호
지원 내용	축산물 위생교육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 조건	민간경상보조 : 국비 100%
시행 주체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사업 규모	축산물식육처리 기능사 및 전문교육 대상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및 재원출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사업	660	660	680	720	740	760

* 상세 : 2014년 축산물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사업 설명자료(축산발전기금 홈페이지 內)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보조금 교부신청 (축산물위생교육원) ▶ 보조금 교부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신청 (축산물위생교육원)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집행 (축산물위생교육원) ▶ 사업완료 보고 (축산물위생교육원)

02 원예 경쟁력 제고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고품질 ·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 · 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지원 조건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지원 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 책임하에 결정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1,177,923	167,835	151,813	150,911	374,633
• 국고	282,521	40,445	38,088	37,288	91,407
• 지방비	309,316	59,758	53,984	54,282	137,335
• 융자	189,813	26,587	21,353	21,353	52,834
• 자부담	396,273	41,045	38,388	37,988	93,057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6번 사업(원예시설현대화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 2016년부터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또는 법인에 한정 지원

– 2016년부터는 참여조직이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 조직에 취급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연차적으로 비율 확대 계획)

〈지원 제외 대상〉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⑧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 · 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우선지원	• GAP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가점부여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다. 지원대상(지원사업)

1)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공동이용설비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시 · 군(1등급)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아래 지역별 · 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기 지원된 시설 · 장비 개보수, 추가 사업(1개)

2)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온 · 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및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 필요한 장비 및 제어
- 과수원의 센싱 · 제어 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네트워크 CCTV를 통한 실시간 농장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알림 정보

〈지원 제외 대상〉

- 직접투입재(비료 · 농약, 부직포설치 등)
-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포도 · 감귤 등의 난방시설
-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단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 책임하에 결정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성과측정
사업신청서 제출(11월) →시 · 군 · 구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단가 결정(시 · 도지사) →시공방식 등 결정	매월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 제출하여 보조금교부 요청(사업자)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점검 (분기별 1회, 시 · 도)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과수재배의 근간인 무병우량묘목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운영지원 및 기반조성
지원 조건	• 민간경상보조 : 기금보조 70%, 자부담 30% • 민간자본보조 : 기금보조 100%
지원 한도	• 운영지원 : 4억 2,900만 원, 기반조성 : 3억 2,000만 원 •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사업규모 및 품목에 따라 조정 가능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24,584	1,040	796	749	699	2,097
• 보조	17,872	709	677	620	579	1,737
• 융자	3,108	–	–	–		
• 자부담	3,604	331	119	129	120	360
묘포장 조성	16,196	193	–	–	–	–
• 보조	9,722	116	–	–		
• 융자	3,108	–	–	–		
• 자부담	3,366	77	–	–		
(사업량)	140	3	–	–		
중앙묘목관리센터	8,388	847	796	749	699	2,097
• 보조	8,150	593	677	620	579	1,737
• 자부담	238	254	119	129	120	360

* 상세 :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묘목생산자단체, 묘목생산자, 대목생산자 선정은 기 완료
  - 묘목생산자단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묘목 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 협약에 참여하는 자
  - 대목생산자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옥천군농업기술센터

※ 모수포장을 설치하여 묘목주산지 과수종묘업자가 무병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무병대목 생산 공급 등을 지원하는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주체 의무사항

1) 묘목생산자단체 : 보증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운영, 피해보상 적립금 운용, 포장 ·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에 대한 내부 규정 제정 · 운영

2) 묘목생산자

- 묘목생산자단체의 자체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포장 · 종자검사를 받아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피해보상적립금 및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모수포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
- 보증묘목 생산판매에 대한 기록의 유지 및 제출

3) 대목생산자

- 자체 생산한 무병대목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품종접수를 자체 보증체계에 참여하는 종묘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의 무병모수 관리에 수반되는 포장 · 종자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을 지도 및 관리

다. 사업대상품목 :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감

라. 지원자금 및 사용용도

- 지원자금 용도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운영지원 및 기반조성
- 지원자금 기준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운영지원(무병원종 증식, 병해충검정, 품질보증 등)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무병품종 선발 · 도입, 검정장비 증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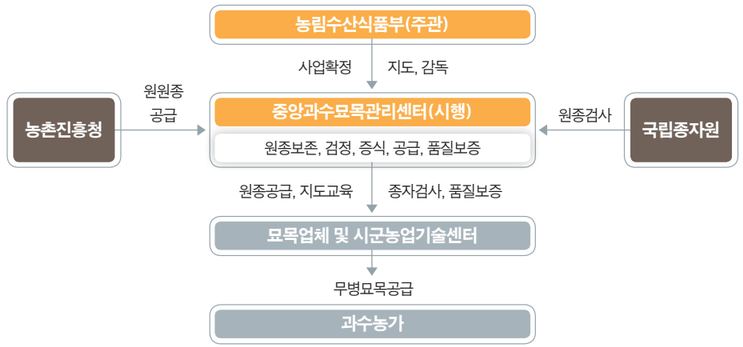
마.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 기금보조 70%, 자부담 30%
- 민간자본보조 : 기금보조 10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운영지원 : 4억 2,900만 원, 기반조성 : 3억 2,000만 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및 품목에 따라 세부항목 및 사업비 조정 가능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과원규모화 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과원매매 · 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지원 내용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 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 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지원 조건	• 과원매매 : 융자 연리 2%,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 거치식 상환 • 과원임대차 : 융자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지원 한도	• 과원매매사업 : 제곱미터(m^2)당 12,1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사업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1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157,017	27,560	27,560	27,260	72,268
과원매매사업	128,824	22,800	22,800	22,800	60,000
• 융자	128,824	22,800	22,800	22,800	60,000
과원임대차사업	28,193	4,760	4,760	4,460	12,268
• 융자	28,193	4,760	4,760	4,460	12,268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8번 사업(과원규모화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1) 과원매도 · 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 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2) 과원매입 · 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3) 대상농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 현황기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명	❶ 과원매매사업	❷ 과원임대차사업
지원자격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5년도의 경우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세부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제외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 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사 업 명	❶ 과원매매사업	❷ 과원임대차사업
지원제외	• 허위 · 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세부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대상 농지	• 매입대상과원 :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 · 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매입우선순위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전업 · 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과원,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등 • 매입제외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세부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 임차대상과원 :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 · 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임차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이하 좌동) • 임차제외과원 :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과원, 한국농어촌공사에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 과원 등 (세부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자금 사용용도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 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 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지원한도 지원한도	• 과수농가 : 3ha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 매매:기존 소유규모, 임차:기존 임차규모 포함	
	제곱미터(㎡)당 12,100원(과수목 포함)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지원형태	융자 연리 2%,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 거치식상환	무이자 융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성과측정
사업신청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1월말) →사업신청서 제출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과원영농규모화 사업의 홍보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계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과수농가)	과수농가의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과실전문 생산단지기반 조성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지원 내용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 · 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지원 조건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지원 한도	• 조사설계비 : 461천 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 원/ha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총괄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114,607	14,865	17,947	17,259	50,851
• 국고	92,058	11,943	14,404	13,789	40,867
• 지방비	22,549	2,922	3,543	3,470	9,984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7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2km 이내로 한정)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지원제외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토지소유주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수혜농가가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원자격 : FTA기금 과실 생산 ·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 (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2)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 · 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과실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 · 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 · 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마케팅 운영 : 인건비 · 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 · 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 개발 등
지원 조건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 한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억~12억 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4억 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생산 · 유통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22,503	1,850	1,750	1,650	23,067
• 국고	11,547	975	905	875	8,220
• 지방비	4,732	240	240	210	5,945
• 자부담	6,224	635	605	565	8,902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3-②번 사업(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실생산 ·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1)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2)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 · 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 · 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 · 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 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 · 도 및 시 · 군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연계 추진 시행주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시 가점 부여

다.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 · 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 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설계비(기본조사)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 (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 (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 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 원/ha

〈개발유형별 지원단가〉

Ⅰ유형(단순정비)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29,268천 원/ha
Ⅱ유형(복합정비)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32,520천 원/ha
Ⅲ유형(종합정비)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35,722천 원/ha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시업신청서 제출(사업자 → 시 · 군),
대상지 현장 답사 시 · 군,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지구별 추진위원회 구성(사업시행자) →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시 · 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승인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시 · 도

▶

공사시행/공사감리, 용지매수/보상
공사 착공 및 보고(사업시행자),
준공검사 신청(사업시행자 → 시 · 도)

▶

자금배정 및 이행점검
사업자 자금집행,
사후관리/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 · 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 · 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수발주관리, 거래처관리, 회원관리 등 브랜드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2) 마케팅 운영 : 인건비 · 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3) 브랜드 홍보 : 광고 · 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억~12억 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4억 원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기본계획 (사업시행지침 등) 통지 농식품부(12월)	세부계획 홍보 시 · 군 · 구(12월)	사업신청 브랜경영체(1월말)
예비심사 시 · 군(2월말)	사업계획 우선순위 결정 시 · 도(3월말)	서면 · 공개발표 평가 후 선정 농식품부(5월말)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 · 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 · 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
지원 내용	집하선별 · 포장 · 예냉 · 저온저장 ·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지원 조건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보완사업 : 국고보조 40%, 지방비 60%)
지원 한도	지원단가 : 150억 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150억 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266,706	16,463	15,410	16,859	181,268
• 국고	119,292	6,585	6,164	6,930	64,321
• 지방비	125,981	5,407	5,073	5,857	52,663
• 자부담	21,433	4,471	4,173	4,072	64,284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2-②번 사업(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과실 생산 · 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 · 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 · 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 · 도 및 시 · 군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지원기준/지원제한기준〉

지원기준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일 경우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대형산지유통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일 경우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50억 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지원제한기준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과실 품목 중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 · 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 · 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 · 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 · 보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 · 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 · 포장 · 예냉 · 저온저장 ·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기타사항〉

❶ 일괄지원의 예외

집하선별포장 · 예냉 · 저온저장 · 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❷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신규시설 중 집하 · 선별 · 포장장, 예냉 · 저온저장고는 각각 66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 · 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 · 선별 · 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❸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신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보완사업 : 국고보조 40%, 지방비 6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가 · 보완사업 : 1년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억 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150억 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신규 지원은 「대형산지유통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 수준, 시설보완(개 · 보수)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수준을 선별 · 지원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기본계획 (사업시행지침 등) 통지 농식품부(12월)	세부계획 홍보 시 · 군 · 구(12월)	사업신청 사업자(1월말)
사업성 진단 신청 및 실시 시·군(1월말), 유통공사(2월말)	사업계획 심사 시 · 도(3월말)	서면 · 공개발표평가 후 선정 농식품부(5월말)

농산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원예 · 밭작물)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원예작물 및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고품질화 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 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 브랜드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생산기반 조성 지원 : 공정육묘장(고추, 양파, 감자, 고구마 등), 우량종구 생산단지(마늘)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 장비 • 총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지원을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지원 조건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사업비 지원한도는 10억 원 기준 – 기금보조 30%,지방비 50%, 자부담 20% (밭작물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국고 100%)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사업비 지원한도는 85억 원(밭작물은 10억 원) – 기금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지원 한도	• 원예작물 : 95억 원(기금보조 28.5, 지방비 47.5, 자부담 19) • 밭작물 : 생산기반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10억 원/개소(기금보조 3, 지방비 5, 자부담 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500만 원/개소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합계	138,468	83,930	42,250	41,385	32,474	28,800
농안기금 보조	28,976	22,430	15,820	13,975	10,004	8,640
농안기금 융자	31,534	27,630	–	–	–	
지방비	32,882	24,957	18,010	19,950	16,050	14,400
자부담	11,010	8,913	8,420	7,460	6,420	5,760
원예작물	132,318	75,730	36,100	36,260	17,100	3,800
• 기금보조	26,426	19,030	13,870	12,350	5,130	1,140
• 융자	65,600	27,630	–	–	–	–
• 지방비	30,482	21,757	15,010	17,450	8,550	1,900
• 자부담	9,810	7,313	7,220	6,460	3,420	760
밭작물	6,150	8,200	6,150	5,125	15,374	25,000
• 기금보조	2,550	3,400	1,950	1,625	4,874	7,500
• 지방비	2,400	3,200	3,000	2,500	7,500	12,500
• 자부담	1,200	1,600	1,200	1,000	3,000	5,000

* 상세 :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5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브랜드경영체(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 법인체

• 자격요건 : 2014년 사업신청자는 시 군 구에 사업신청서 제출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최근년도 참여조직의 매출액 50억 원 또는 공동계산액 30억 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

다. 지원대상

• 원예작물 :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 밭작물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직운영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조직결성 및 법인설립, 교육, 경영 컨설팅 등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 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생산기반 조성 지원 : 공정육묘장(고추, 양파, 감자, 고구마 등), 우량종구 생산단지(마늘)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지원을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사업비 지원한도는 10억 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30%,지방비 50%, 자부담 20% (밭작물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국고 100%)

– 브랜드경영체가 광역유통주체와 동일주체인 경우 원예브랜드 사업비 지원 제외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사업비 지원한도는 85억 원(밭작물은 10억 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원예작물 3년간, 밭작물 1년간

– 년차별 사업비 배분(원예작물) :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 개소당 사업비 한도 :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사업비 감액 조정

– 원예작물 : 95억 원(기금보조 28.5, 지방비 47.5, 자부담 19)

– 밭작물 : 생산기반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10억 원/개소(기금보조 3, 지방비 5, 자부담 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500만 원/개소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사업평가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평가를 통한 선정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 실시 후 사업추진에 반영	월별 소요자금 신청 (사업대상자) → 시 · 군→농식품부	중간점검(당해연도 5월, 10월) 및 점검결과 조치, 사후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인삼 · 약용작물계열화 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인삼 · 약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 · 가공 ·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 약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이력관리가 된 안전한 인삼 · 약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지원 내용	• 계약재배 자금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 · 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나서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수매자금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 · 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해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 · 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해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지원 조건	• 농협 : 국고융자 80%, 자부담(농협중앙회 10%, 농협 10%) • 일반업체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지원 한도	• 계약재배 – 인삼 : 10a당 3,150천 원 – 약용작물 :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인삼 : 연근별 · 등급별로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약용작물 :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인삼종자 :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이후
합계	64,815	71,415	23,290	23,375	233,750
• 융자	51,852	57,132	18,632	18,700	187,000
• 자부담	12,963	14,283	4,658	4,675	46,750
계약재배	14,612	21,212	21,227	20,187	201,870
• 융자	11,690	16,970	16,982	16,150	161,500
• 자부담	2,922	4,242	4,245	4,037	40,370
수매사업	50,203	50,203	2,063	3,188	31,880
• 융자	40,162	40,162	1,650	2,550	25,500
• 자부담	10,041	10,041	413	638	6,38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8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인삼 · 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 · 가공 · 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인삼종자를 계약 · 수매 · 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나. 지원자격 및 요건

1)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수출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농협 등), 가공업체 등에 대해 우선권 부여
• 백삼제품, 수삼표준규격품 판매 실적 및 판매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권 부여
• 약용작물(한약재) 저온 · 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 시 우선지원

2) 계약재배 참여농가

• 인삼(4년근 이상) 또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GAP인증농가는 계약재배 대상 우선권 부여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토양검사(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삼 · 약용작물 계약 · 수매 자금, 인삼종자 수매자금

1) 계약재배 자금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 · 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나서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2) 수매자금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 · 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해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 수매. 잔류농약 분석결과 불합격된 농가의 명단은 불합격 판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야 함

• 생산자단체(농협 등)가 인삼종자를 농가로부터 계약 ·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안기금 : 인삼 계약재배자금, 인삼종자수매자금, 약용작물 계약 및 수매자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차보전) : 인삼 수매자금
※ 인삼 수매자금은 농협은행 이차보전 자금으로 융자지원
• 사업주관 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비 조성 비율
– 농협 : 국고융자 80%, 자부담(농협중앙회 10%, 농협 10%)
– 일반업체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계약재배

- 인삼 : 10a당 3,150천 원
- 약용작물 :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2) 수매단가

- 인삼 : 연근별 · 등급별로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약용작물 :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인삼종자 :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사업평가
운영계획 수립(농협중앙회),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사업 및 자금관리 (농협중앙회)	사업대상자의 계약 · 수매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농협중앙회)	사업평가 (익년 1월까지 농식품부 보고), 우수농협/ 부진농협 평가

인삼생산 ·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 · 규모화 · 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지원 내용	• 생산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 · 가공시설 지원 및 SW부문 지원 • 마케팅 · 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 · 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생산 · 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 · 경영전략컨설팅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지원 한도	• 생산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 원/개소당(2년간 사업) • 마케팅 · 경영전략컨설팅 : 1억 원/개소당(2년간 사업)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시 · 도 인삼산업 담당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4,200	4,607	4,700	2,100	47,000
• 국고	1,260	1,667	1,760	630	17,600
• 지방비	1,720	1,720	1,720	860	17,200
• 자부담	1,220	1,220	1,220	610	12,20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2-③번 사업(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경작규모 200㏊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식품사업 ·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 단체 · 농업법인

다.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1) 생산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 · 가공시설 지원 및 SW부문 지원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선정

〈SW부문〉

- USN을 활용한 온 · 습도, 이산화탄소 등 저온저장고 · 예냉실 · 가공장 환경모니터링
-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가공관리, 선별관리, 운송관리, 자재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등 유통 · 물류관리
- CCTV를 활용한 저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2) 마케팅 · 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 · 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라.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생산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 원/개소당(2년간 사업)
  - 마케팅 · 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 원/개소당(2년간 사업)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지원비율

– 생산 · 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 · 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사업평가
운영계획 수립(농협중앙회),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사업 및 자금관리 (농협중앙회)	사업대상자의 계약 · 수매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농협중앙회)	사업평가 (익년 1월까지 농식품부 보고), 우수농협/ 부진농협 평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 · 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무 · 배추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화훼류습식유통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기타부자재 구입비용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지원 조건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화훼류습식유통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무 · 배추 출하조절시설: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 한도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액 상이(하단 사업시행 내용 참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종자생명산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48,521	37,022	16,062	20,650	36,647
• 국고	16,704	9,750	3,261	6,195	10,994
• 지방비	770	9,658	3,261	6,195	10,994
• 융자	11,992	7,989	4,770	600	1,400
• 자부담	19,055	9,625	4,770	7,660	13,259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48,521	17,022	16,062	17,650	29,647
• 국고	16,704	3,750	3,261	5,295	8,894
• 지방비	770	3,658	3,261	5,295	8,894
• 융자	11,992	3,989	4,770	–	–
• 자부담	19,055	5,625	4,770	7,060	11,859
무 · 배추출하조절시설	–	20,000	–	3,000	7,000
• 국고	–	6,000	–	900	2,100
• 지방비	–	6,000	–	900	2,100
• 융자	–	4,000	–	600	1,400
• 자부담	–	4,000	–	600	1,40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2-④번 사업(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2014년도 또는 2013년도)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1억 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저장시설(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165㎡(50평)이하 소규모는 연간 3억 원 이상인 법인도 지원가능
- 저온수송차량 :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김치가공업체도 가능)
- 화훼류습식유통 : 2010~2014년 기간 중 화훼류습식유통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사업시행주체
- 양잠산물저온유통 :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에서 직접 수요 조사)
- 무 · 배추 출하조절시설지원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무 · 배추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농업협동조합 및 법인(공모)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별도의 법인 설립시 참여 회원의 전년도 사업실적의 합 및 계획이 위 기준을 충족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다.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 · 무 등 김치원료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화훼류습식유통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기타부자재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업실
- 무 · 배추 출하조절시설(2년 사업) :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 수확 및 포전관리 장비, 절임배추 가공시설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기타부자재 구입비용
  ※ 기타부자재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하되, 소모성자재는 지양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출하의무물량: 사업대상자는 3년간(지원받은 연도 포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또는 농협 화훼공판장으로 습식출하하는 물량을 직전년도 습식출하물량 대비 10% 이상 확대
    ※ 2015년도 습식출하 실적에 따라 2016년 사업비 배정 시 반영
- 화훼류습식유통: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무 · 배추 출하조절시설: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국고는(보조, 융자) 1년차 30%, 2년차 70% 지원
  ※ 지원사업자는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 원) 신규	사업비(백만 원) 개보수	기준단가	비고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까지	70	17.5	• 신규 : 106만 원/㎡ • 개보수 : 신규의 25%	•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원규모의 50%까지 확대 가능
	예냉설비 강제통풍식	66㎡까지	60	15.0	• 신규 : 91만 원/㎡ • 개보수 : 신규의 25%	
	예냉설비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 200백만 원/대	
	저온저장고	99㎡~660㎡	90~660	22.5~165	• 신규 : 100만 원/㎡ •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99㎡~660㎡	79.2~528	19.8~132	• 신규 : 80만 원/㎡ • 개보수 : 신규의 25%	• 개 · 보수는 상온선별장에서 저온선별장으로 개보수시 적용
	저온수송 또는PCM 저온수송 냉장차량 1톤이상~5톤이하	1대	110	30	•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화훼류 습식 유통	습식대차	70대 이하	63	–	• 900천 원/대	•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 확인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집행 • 기타부자재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하되, 소모성자재는 지양
	습식물통	2,000통 이하	60	–	• 30천 원/통	
	화훼포장망	3,000망 이하	27	–	• 9천 원/망	
	수명연장제	70개 이하	28	–	• 400천 원/개	
	기타부자재	–	–	–	–	
양잠 산물 저온 유통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66㎡까지	54	–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이상 •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이상 • 작업실 33㎡이상	–
무 · 배추 출하조절 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절임배추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3,300㎡ 이상 330㎡ 3,300㎡ –	4,000 400 4,000 1,600		• 저온저장고 및 예냉설비 :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기준과 동일	• 저온저장시설은 반드시 3,300㎡이상 확보 – 기타 시설 및 장비는 여건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식품 · 외식 종합자금사업 (신선편이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식품제조 ·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와 국내산 농산물 매입지원으로 농식품 제조 · 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 외식업체 지원으로 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지원 내용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시설자금 – 소규모 식품제조 · 가공식품 창업 농업인에 한해 운영자금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금 : 시설 및 국내산 식재로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국내산 농산물 수매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조건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3~4%)
지원 한도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50억 원 • 외식업체육성 : 운영자금 5억 원, 시설자금 1억 원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30억 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160,000	167,500	130,300	114,000	114,000
• 융자	160,000	147,500	130,300	114,000	114,000
농식품시설현대화					
• 융자	44,800	36,300	36,300	15,300	15,300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융자	17,200	37,200	0	0	0
외식업체육성					
• 융자	7,000	3,000	3,000	2,700	2,700
식품가공원료매입자원					
• 융자	91,000	91,000	91,000	96,000	96,000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14년부터 별도사업으로 분리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1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 ·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제조 · 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다. 지원대상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식품 창업 농업인에 한해 운영자금 · 시설자금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금 : 시설 및 국내산 식재로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국내산 농산물 수매를 위한 운영자금

라. 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저장 가공 부대시설의 건축 확보 증설 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구입, 저장 가공 등 기업경영비용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대출금리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3~4%

※ 일반업체는 4%,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3%

※ 단,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중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기술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전통주(국산농산물 50%이상 사용 막걸리 포함) 제조업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거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는 3%

• 대출기한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상환), 운영자금(2년이내)

– 외식업체육성 :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1년이내)

– 식품가공원료매입 : 운영자금(1년이내)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의무량

– 시설자금 : 시설완료 및 인증취득

– 운영자금 : 지원액의 125%이상 국내산 농산물(식재료) 구매

※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 창업자금은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25%이상 이어야 함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식품시설현대화 : 50억 원

• 외식업체육성 : 운영자금 5억 원, 시설자금 1억 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 30억 원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이행점검 및 사업평가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지원 (농협중앙회)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실시,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

감자저온 저장시설지원

사업 개요

한 · 영연방 FTA 신규

주요 내용	수입대체 감자칩 가공용 품종 개발, 계약재배 활성화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가공원료 연중 공급 시스템 구축
지원 내용	감자 주산지의 농업법인 및 지역조합 대상 매년 1개소 지원(2016년부터)
지원 조건	국고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지원 한도	총사업규모 10억 원/개소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 (2014년 10월 발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0번 사업 포함 예정(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內)

맥류건조 · 저장시설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밭식량작물(맥류)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재배산지의 규모화 · 단지화
지원 내용	맥류 건조 · 저장을 위한 원료투입구, 사일로, 건조기 등 (사일로는 1,000톤 규모로 설치)
지원 조건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 한도	신설은 9억 원, 증설은 6억 원 지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맥류 건조 · 저장 시설	소계	3,000	3,000	3,000	3,000	3,900	39,000
	• 국고	900	900	900	900	1,170	11,700
	• 지방비	300	900	900	900	1,170	11,700
	• 자부담	1,800	1,200	1,200	1,200	1,560	15,60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0-ⓐ번 사업(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 품목)
- 사업주관기관 : 시장 · 군수
- 자격요건 : 2016년 사업신청자는 시 군 구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설립이 1년 이상 경과되고, 전년도 판매실적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체
- 지원자격 : 맥류 재배면적이 3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의 사업대상자

나. 지원자금 용도

- 지원내용 : 맥류 건조 · 저장을 위한 원료투입구, 사일로, 건조기 등
  - 사일로는 1,000톤 규모로 설치(예시 : 500톤×2기)

다. 지원형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사업기간 : 1년)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설은 9억 원, 증설은 6억 원 지원

콩 유통 종합처리장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국산 콩의 선별, 저장, 포장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도모 • 국산 콩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수급안정 및 국산콩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지원 내용	• 생산기반 조성지원 :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 · 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정선시설, 선별시설, 저장창고, 저온저장창고 등 • 회원농가 재배기술 교육 · 컨설팅 등 조직운영과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조건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지원 한도	총 사업비 30억 원/1개소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산콩유통 종합처리장	소계	3,000	-	3,000	3,000	30,000
	• 국고	1,200	-	1,200	1,200	12,000
	• 지방비	900	-	900	900	9,000
	• 자부담	900	-	900	900	9,00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0-ⓗ번 사업(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 품목)
- 사업주관기관 : 시장 · 군수
- 자격요건 : 2016년 사업신청자는 시 군 구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설립이 1년 이상 경과되고, 전년도 판매실적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체
- 지원자격 : 국산콩 재배면적이 1,0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의 사업대상자

나. 지원자금 용도

- 생산기반 조성지원 :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 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정선시설, 선별시설, 저장창고, 저온저장창고 등
- 회원농가 재배기술 교육 컨설팅 등 조직운영과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지원형태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방비는 시 도 및 시 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 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지방비 부담 가능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 30억 원/1개소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 사업신청(2월)	• 시 · 군→시 · 도→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승인(3월)	•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실무 검토 •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 사업대상 선정(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성공가능성 등) • 확정통지 : 농식품부→시 · 도→시 · 군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승인(3월)	• 세부사업별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승인
• 사업착수 및 추진(3월)	• 시공업체선정 및 인허가 절차 추진 • 공사 및 장비구입 등 사업 착수
• 사업지도감독 및 사업비 집행	• 농식품부, 지자체 합동 지도반 편성 운영 •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및 평가 · 분석(11월)	• 사업비 정산 및 세부사업별 평가 · 분석

계열화경영체 육성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 및 생산 · 유통 구조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 생산기반 시설 장비 : 공동육묘장, 우량종자 생산단지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저장, 가공, 위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해당 시군 지역)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지원을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 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농가조직화 지원 : 농가조직화를 위한 농가교육 등
지원 조건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지원 한도	생산기반 시설 · 장비 및 종합처리시설 등 : 10억 원/개소 * 개소당 사업비 한도는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사업비 감액 조정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열화 경영체 육성	소계	6,150	5,125	15,374	7,200	7,255	72,000
	• 국고	1,950	1,625	4,874	2,300	2,355	23,000
	• 지방비	3,000	2,500	7,500	3,500	3,500	35,000
	• 자부담	1,200	1,000	3,000	1,400	1,400	14,00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0-㉗번 사업(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 품목)
- 사업주관기관 : 시장 · 군수
- 자격요건 : 2016년 사업신청자는 시 군 구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설립이 1년 이상 경과되고, 전년도 판매실적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체
- 지원자격 : 생산기반 확보 · 관리, 수확후 건조 · 저장 · 가공 등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법인체

※ 지원대상품목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나. 지원자금 용도

- 생산기반 시설 장비 : 공동육묘장, 우량종자 생산단지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저장, 가공, 위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해당 시군 지역)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지원을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 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농가조직화 지원 : 농가조직화를 위한 농가교육 등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지원형태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생산기반 시설 · 장비 및 종합처리시설 등 : 10억 원/개소

※ 개소당 사업비 한도는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사업비 감액 조정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산지의 규모화 ·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 ·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지원 내용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지원 조건	국고 보조 50%, 자부담 50%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지원 한도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00만 원, 상한 1억 5,000만 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물류기기공동이용	188,745	45,030	32,430	32,430	194,290
• 국고	106,706	22,515	16,215	16,215	97,145
• 자부담	81,848	22,515	16,215	16,215	97,145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1–②번 사업(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채소류 주산지(시 군 단위)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에 대해 우선 지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 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 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다.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땅콩, 기타 잡곡류(미곡, 맥류는 제외)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수삼,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한약재용(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등
임산물류	밤, 잣, 대추, 호두,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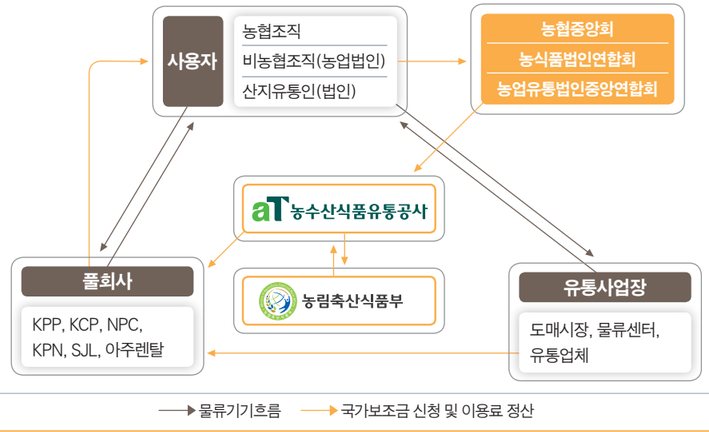
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자부담 50%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사업시행지침 원본 참조)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법인조직 중 취급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할 수 있음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소속 산지유통인은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00만 원, 상한 1억 5,000만 원
  ※ 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마늘 · 양파 자조금사업 (농산물자조금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
지원 내용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지원 조건	국고보조
지원 한도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00만 원, 상한 1억 5,000만 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16,054	15,930	16,000	73,998	
• 국고	8,027	7,965	8,000	36,999	
• 자부담	8,027	7,965	8,000	36,999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7번 사업(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의 자조금단체

1) 임의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후 3년간 지원하고,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국고 지원을 중단(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

2) 의무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등의 비율이 5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50% 이상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통계 등을 활용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 농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 · 연구
-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형태 및 거출형태

-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단, 당해연도(전년도 이월액 제외)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 최근 3년간의 총 생산액이 1,000억 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1,000억 원 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 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품목별 생산액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하며, 해당 농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음
  - 거출금 규모 산정시 대납 인정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 대납 인정 비중 계획 : (2014) 100% → (2015) 50 → (2016) 25 → (2017) 불인정

- 임의거출금의 한도는 임의자조금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 정함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승인 단계를 준용하여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신청단계	사업승인 및 시행단계	자금배정	이행점검 및 성과측정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서 승인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생산자체)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자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 공시 ·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03 맞춤형농정 추진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
지원 내용	〈교육지원〉 창업기반 조성, 농업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조건	융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농협은행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2,960,630	101,200	101,200	101,200	101,200
융자	2,960,630	101,200	101,200	101,200	101,20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45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병역 : 병역필 ·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2014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나.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1) 창업기반 조성비용

• 지원내용

– 경종분야 :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운영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시설설치, 운영자금

• 지원형태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 농업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교육비 일부 지원

– 경영 컨설팅업체 자문 비용 일부 지원

3) 융자방식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사업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3년) 이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 융자

– 사전 융자 : 사업추진계획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사후 융자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융자제외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내용 참조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 개요

주요 내용	후계농업인에게 자금을 추가지원하여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와 유지에 기여 •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 전문인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을 정책차원에서 조성
지원 내용	〈교육지원〉 우수후계농업인에게 추가적으로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지원 조건	융자 100%(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농협은행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636,000	80,000	80,00	80,000	80,000
융자	636,000	80,000	80,000	80,000	80,000

* 상세 : 2014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시행지침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발 · 추천한 사람

나.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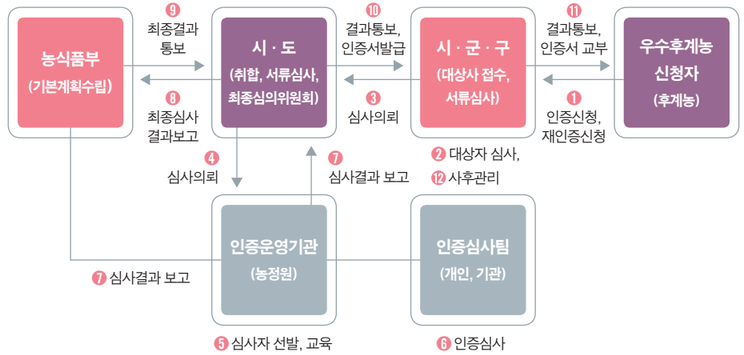
1) 창업기반 조성비용

• 지원내용
– 경종분야 :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운영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시설설치, 운영자금
• 지원형태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2) 융자방식

• 지원내용
– 사전 융자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에 대해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에서 사전 대출
– 사후 융자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 · 제조 사업, 묘목 · 종근 구입 등
※ 융자제외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내용 참조

시업절차(표준 프로세스)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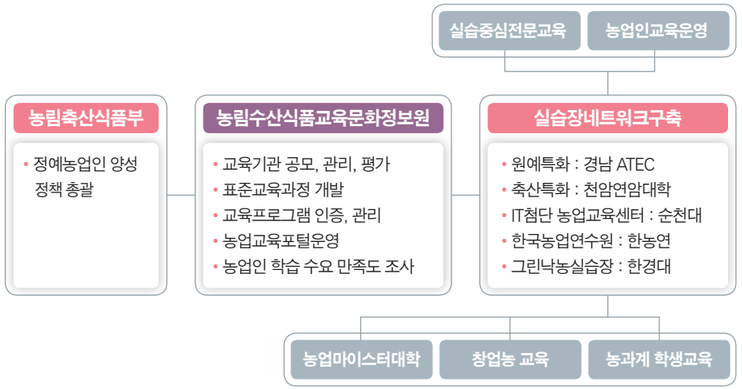
주요 내용	• 농업기술 · 경영교육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지원 내용	〈교육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
지원 조건	• 민간 보조 : 국고 50~70%, 자부담 30~50% • 지자체 보조 : 국고 50~100%, 지방비 0~40%, 자부담 0~3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상세 : 농업 ·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2014년 운영지침

사업시행 내용

- 농산업에 진출하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험 및 숙련도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업 · 농촌 공모교육은 기획공모(농정에 부합하는 정책 중심)와 일반공모(농업인 등의 수요)로 운영
- 농촌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미래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착단계별 농업교육 실시
- 현장실습교육(WPL)장의 운영성과 점검 및 교육 내실화
- 지역특화 및 수출전략 품목 중심으로 농업마이스터대학 전공 교과목 개선 및 신입생 모집 추진
-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 및 지정자의 활용도 제고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원 내용	〈자금지원〉 전문가로부터 경영 · 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 조건	국고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상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평가인증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92,602	5,200	5,200	5,200	5,200
• 국고	39,482	1,560	1,560	1,560	1,560
• 지방비	18,353	1,040	1,040	1,040	1,040
• 자부담	35,009	2,600	2,600	2,600	2,60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41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RPC, 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성 · 운영되는 경영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농업법인 등 :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인 법인
- 지원제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법인
  - 해당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나 농촌진흥청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세부내용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다. 지원대상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1. 경영 역량강화 컨설팅	• 경영개선	2. 대외혁신 역량강화 컨설팅	• 기술개발
	• 브랜드개발, 마케팅 및 홍보		• 수출역량강화
	• 정보화		• 가업승계
	•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 사업전환
	• 6차 산업화		• 지적재산권 등록
	• 로컬푸드		• 투자유치

라. 지원한도액

- 법인 : 총사업비 5,000만 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 원) 이내
  -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한 법인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 1,000만 원(국고보조한도 300만 원)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미등록(또는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지원 내용	등록된 경영체에 농림사업, 직불제 등 우선 지원
지원 조건	보조
관할 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농업경영체등록	16,356	16,694	18,124	19,926	19,839

* 상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농업경영체등록내용 및 절차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1) 신규등록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2) 변경등록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나.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규등록

• 경영 또는 경작농지 1,000㎡ 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2) 변경등록

• 농업인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리 신청(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이 신청)

다. 등록대상 주요내용

1) 신규등록

• 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93개 항목

2) 변경등록

•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 :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 :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 · 실제 관리 및 휴 · 폐경), 경영형태(자경 · 임차)

•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 · 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 · 수탁)

• 생산정보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노지와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이 각각 660㎡, 33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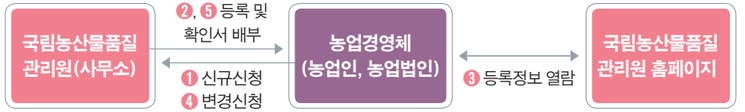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다만 가축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소 3마리, 돼지 50마리, 닭 1,000마리, 오리 500마리 이내로 상시로 사육마릿수가 변경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 3마리, 돼지 50마리, 닭 1,000마리, 오리 500마리, 젖소 납유량 10,000리터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농업재해보험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거대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 내용	〈자금지원〉 순보험료,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영비, 재해보험사업기관 영업보험료
지원 조건	순보험료의 50% 보조, 운영비 100% 보조, 상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50% 보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10,932	158,242	189,817	277,751	383,723
• 보조	67,732	97,221	114,007	159,396	217,233
• 자부담	43,200	61,021	75,810	118,355	166,790

* 상세 : 2014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13차)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나.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 · 밭 · 버섯작물

– 사업시설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다. 보험대상품목

• 본사업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대추, 고추,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26개 품목)

• 시범사업

구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숭아, 포도 (전국판매)	복분자	인삼, 오디, 차, 시설파프리카, 시설멜론	벼(전국판매),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시설상추,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배(종합위험)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 단감(종합위험)
작물수	2	1	5	7	4

※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 특정 재배방법, 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내용 참조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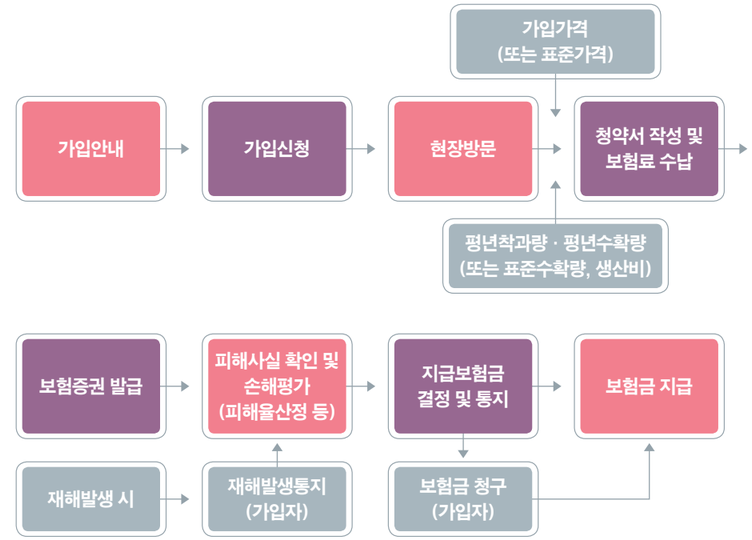
•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일반관리비, 영업비, 사업자 수수료, 품목개발비 등)

바. 지원한도액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예산범위 내 지원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농업재해 재보험금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거대재해 발생 시 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위험을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상
지원 내용	〈자금지원〉 순보험료,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영비, 재해보험사업기관 영업보험료
지원 조건	순보험료 50% 보조, 운영비 100% 보조, 상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50% 보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
재정투입계획	〈지출계획전망〉

(단위 : 억 원)

구분	2012년 실적	2013년 계획	2014년 요구	2015년 전망	2016년 전망
• 지출규모	3,017	705	1,398	1,768	2,354
• 사업비	2,925	230	230	80	80
• 기금운영비	7	7	7	7	7
• 정부내부지출	–	–	–	–	–
• 여유자금운용	85	467	1,162	1,682	2,267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 원)

계	139,804	계	139,804
• 정부출연금	70,000	• 재보험금	23,000
• 재보험료수입	13,194	• 기금운영비	651
• 이자수입	6,810	• 여유자금운용	116,153
• 여유자금회수	49,800		

* 상세 : 2014년도 농업재해재보험금 기금운용계획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농업용시설물 소유자 또는 법인
- 보험대상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경작

나. 지원한도액

- 손해율이 180% 초과인 경우는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
  – 180% 이하일 경우 재해보험사업자 인수

밭농업직불제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지원 내용	〈자금지원〉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
지원 조건	보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62,365	72,577	134,731	192,931	228,309
국고	62,365	72,577	134,731	192,931	228,309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50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 원 이상
  –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

나. 지원대상

- 지급대상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연도 휴경의 경우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임(㏊당 25만 원)
  – 밭농업직접지불금(26개 품목) : 공부상 밭(田)인 농지(㏊당 40만 원)
  – 밭농업직접지불금(논 이모작)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 ·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당 50만 원)
- 지원품목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작물 재배 농지)
  –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 밭재배 26개 품목, 논 이모작(아래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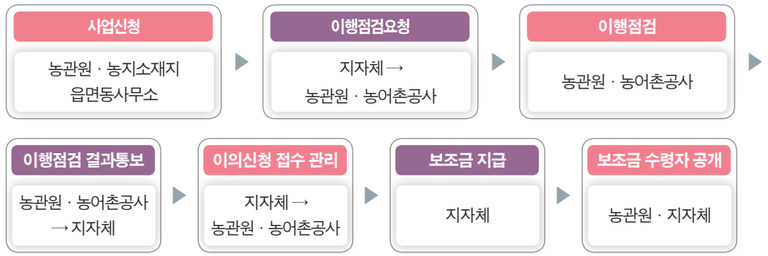
동계	하계	동계 논 재배 사료 ·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다. 지원한도액

• 지급상한 : 농업인 40,000㎡, 영농종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
  – 논 이모작의 경우 지급상한은 농업인 300,000㎡, 농업법인 500,000㎡으로 함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해당 지역 공동화 예방
지원 내용	〈자금지원〉 농업인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 조성
지원 조건	국고 80%, 지방비 2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421,478	49,170	49,170	49,170	49,170
• 국고	327,803	39,511	39,511	39,511	39,511
• 지방비	93,675	9,659	9,659	9,659	9,659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51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 · 면에 거주하거나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 · 면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 또는 농지(토지)

나. 지원대상

• 대상지역

구 분	육지지역	도서지역
조 건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 50% 이상인 법정리	모든 읍면의 법정리 (경지율과 경사도에 관계없음)

※ 동(洞) 지역은 모두 제외

• 대상토지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토지

• 지급요건
  – 보조금지급개시 연도 신청일로부터 보조금지급연도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 거주
  –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
  –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다.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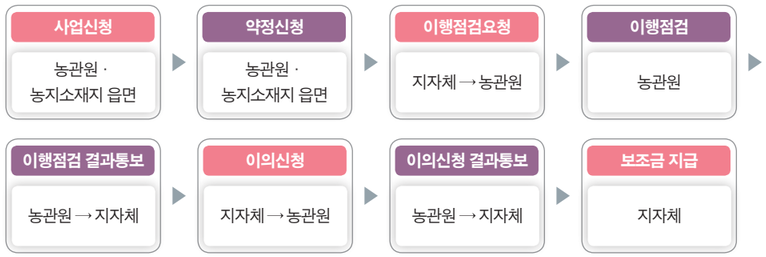
• 지원금액 : 논 · 밭 · 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논 · 밭 · 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라. 지원한도액

• 농업인 당 지원하한 면적 : 1,000㎡ 이상(지원대상 동일 읍 · 면내 농지면적)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및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작업 효율성 향상
지원 내용	〈자금지원〉 임대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지원
지원 조건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227,900	40,000	40,000	44,000	50,000
• 국고	112,800	20,000	20,000	22,000	25,000
• 지방비	115,100	20,000	20,000	22,000	25,00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6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나. 지원대상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등에 임대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이 원칙
  – 고추 · 마늘 · 양파 전용 농기계임대사업은 고추 · 마늘 · 양파 공용 또는 전용 농기계를 우선 구입해야 함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 농기계 보관창고 및 세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
  – 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00만 원 이내)

라. 지원형태

• 총사업량 : 44개소(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 30개소, 고추 · 마늘 · 양파 전용 농기계임대사업 14개소)

마. 지원한도액

• 사업단가 : 10억 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 · 장비 지원
  –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

농지매입 · 비축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고령 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원활한 영농은퇴 및 이농 지원 • 농업진흥지역 내 생산기반 여건이 우량한 농지 위주로 매입 – 매입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 임대
지원 내용	〈자금지원〉 매입대상 농지 매입비
지원 조건	융자 100%(무이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1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392,198	167,439	117,500	144,000	449,317
• 융자	392,198	166,498	117,500	144,000	449,317
• 보조	–	942	–	–	–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3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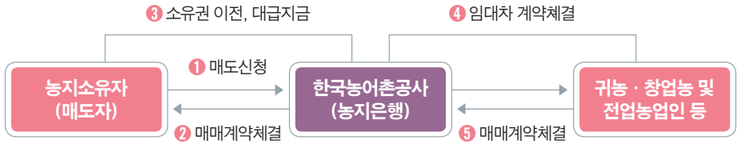
가. 사업대상자

• 매입대상자 : 이농 · 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및 경영규모 축소 희망 농업인(단, 고령인 경우 만 60세 이상에 한함),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임대대상자 : 영농규모 증대를 희망하거나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지원대상

• 매입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인 농지

사업절차(표준프로세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 및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업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
지원 내용	〈자금지원〉 농업경영 이양 후 고령농업인에게 생활자금 지급
지원 조건	민간경상보조 10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523,999	62,420	61,737	58,998	62,313
보조	523,999	62,420	61,737	58,998	62,313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47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신청대상

–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1944년 1일 1일 ~ 194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못했다고 인정될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도 포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상 제외

–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

– 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3,000㎡)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야 함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다. 지원대상 농지

•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 밭 · 과수원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 · 밭 · 과수원

라. 지원형태

• 지급단가 : ㎡당 300원/연(㏊당 300만 원/연)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지금방법 : 보조금 총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총 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매월 경영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마. 지원한도액

• 지급 상한면적 : 20,000㎡

• 연령별 지급기간

연령	66세 이하 (1949~1950년생)	67세 (1948년생)	68세 (1947년생)	69세 (1946년생)	70세 (1945년생)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사업시행지침 통지 및 예산내시 농림부 →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공사 ↔ 농림부	사업 시행계획 홍보 및 공고 본사 · 지역본부 · 지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농업인 → 지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지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지 지사 → 신청인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 지사 ↔ 신청인	보조금 지급 지사 ↔ 신청인

농지연금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연금 수령과 동시에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 창출 가능 – 농지 소유자 사망시 배우자가 승계해서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 수령
지원 내용	〈자금지원〉 농지를 담보로 노후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지원 조건	융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한국농어촌공사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농지연금	15	190	237	339

* 상세 : 2014년도 농지연금 사업시행요령

사업시행 내용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지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일 경우 비승계 가입

• 영농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

–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나. 지원대상 농지(담보농지)

•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내용 참조

다. 지원형태

• 종신형 :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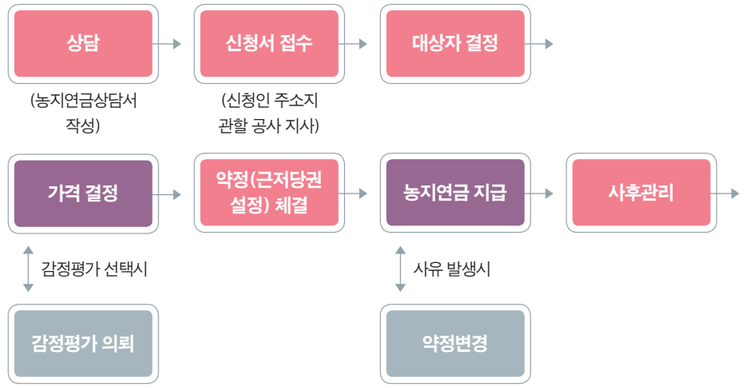
• 기간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지급방식별 가입가능 연령〉

기간	5년형	10년형	15년형	종신형
가입 연령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5세 이상

※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자 기준(단,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기준)

사업절차(표준프로세스)



※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또는 농지연금포털 사이트(www.fplove.or.kr)를 통해 신청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수리시설 · 방조제 개보수 및 흙수로의 구조물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지 · 관리 • 저수지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오염물질을 제거 및 부족한 저수량 확보
지원 내용	〈시설지원〉 노후 또는 파손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지원 조건	국고보조 10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5,557,128	370,000	480,000	480,000	8,045,272
• 보조	5,528,228	370,000	480,000	480,000	8,045,272
• 융자	20,253	–	–	–	–
• 자부담	8,647	–	–	–	–

* 상세 : 20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7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수 ·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

– PMF 적용지는 예정지조사가 완료된 곳이어야 함

※ PMF : Probable Maximum Flood, 예측되는 최대홍수량

• 재해대비와 영농편의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재해대비 및 영농편의 유형구분〉

구 분	보수 · 보강 분야
재해대비 (수원공)	• 재해위험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수원공 및 평야부 중요 구조물 보수 · 보강 • 수리시설의 안전상태 및 보수 · 보강 방안강구 등을 위한 안전진단
영농편의 (평야부)	• 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원활하지 못한 흙수로를 보수 · 보강 • 토사가 퇴적된 저수지 준설 및 농로 교차로와 농경지 진입로 확장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리시설 보수 · 보강 공사지(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안전진단 사업비 등으로 집행

– PMF 적용지구는 기본조사비 집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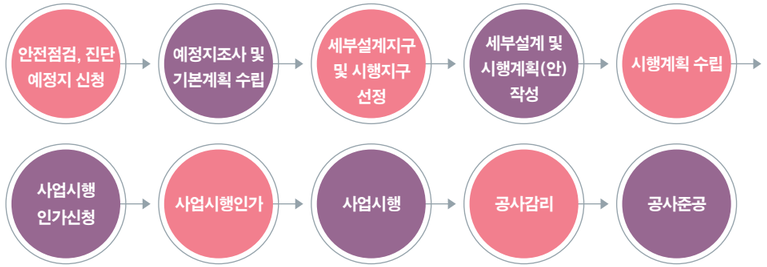
라. 지원한도액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 안전진단 사업비 :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 및 당해연도 세부시행계획 금액 내에서 지원

사업절차(표준프로세스)



배수개선

사업 개요

주요 내용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 설치를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 • 수령논 또는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작업환경 및 작물재배 환경 개선
지원 내용	〈시설지원〉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등
지원 조건	국고 100%
목 적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와 영농안정 도모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3,718,716	250,000	300,000	290,000	7,310,384
• 국고	3,696,978	250,000	300,000	290,000	7,310,384
• 융자	21,738	–	–	–	–

* 상세 : 20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4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 : 시장 · 군수 ·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기본조사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와 시행중인 지구 중 예산이 편성된 지구
• 기본조사비 : 시 · 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50㏊ 이상)

다. 지원대상

• 홍수 발생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
• 동일 수계에 여러 사업지구가 있는 경우 하류부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선정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 :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집행
• 기본조사비 :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기본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마. 지원한도액

• 사업비 :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기본조사비 :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은 기본조사비 소요액 지원

다목적농촌 용수개발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가뭄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농어촌 환경개선 도모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 설치를 통한 농촌용수를 확보 · 공급
지원 내용	〈시설지원〉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지원 조건	국고 10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5,364,195	210,000	245,000	260,000	4,640,000
국고보조	5,364,195	210,000	245,000	260,000	4,640,000

* 상세 : 20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8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 :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지구
• 조사설계비 :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

다. 지원한도액

• 세부설계결과에 따른 지구별 소요사업비 지원

04 신성장동력 창출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중소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에 초점을 두어 지원하고, 우수단지에는 시설 · 장비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 추진
지원 내용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시설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 · 장비 〈자금 · 교육지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R&D, 상품화 등 • 인센티브사업 〈시설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에 필요한 시설 · 장비 확충,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조건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국고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인센티브사업 국고보조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660,919	85,402	87,373	37,933	222,666
• 국고보조	273,255	25,391	17,212	11,450	66,800
• 융자	29,500	–	–	–	–
• 지방비	243,719	35,220	24,449	16,483	111,333
• 자부담	114,445	24,791	15,712	10,000	44,533

* 상세 : 2015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1)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2) 인센티브사업

• 사업대상자 : 2006~2014년간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사업주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1) 친환경농업지구

• 농경지가 10㏊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의 생산자단체
  – 곡류는 50㏊ 이상 들녘, 원예 · 과수 등은 10㏊ 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을 우선 선정
• 우대조건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내 관행농업인의 친환경 전환 희망 시 선정 우대
  – RPC 또는 APC와 연계하여 공동 생산 · 유통하는 등 판매계획이 탁월한 지역

2) 인센티브사업

• 2006~2014년간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서 시설 · 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의 사업주체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지
  – 정부의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

다. 지원대상

1) 친환경농업지구

- 시설지원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 · 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 · 체험시설 · 장비 등
- 자금 · 교육지원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마케팅, 디자인 · 공동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2) 인센티브사업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에 필요한 시설 · 장비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라. 지원형태

1) 친환경농업지구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사업기간은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1~3년)
  - 1년 사업 : 당해연도 국고100% 지원
  - 2년 사업 : 1년차 국고 40%, 2년차 60% 지원
  - 3년 사업 : 1년차 국고 10%, 2년차 40%, 3년차 50% 지원

2) 인센티브사업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1년(당해연도 국고 100% 지원. 단, 사업진척도에 따라 자금배정)

마. 지원한도액

1) 친환경농업지구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30억 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2) 인센티브사업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 단지의 여건, 규모 등에 따라 결정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
지원 내용	〈자금지원〉 신규 개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지원 조건	융자 8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상세 : 2014년도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계획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1)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그 자회사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법인 또는 동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
  - 법인등록 6개월 이상의 법인
  - 판매장 개설지역 : 특별시 · 광역시, 경기도, 도청소재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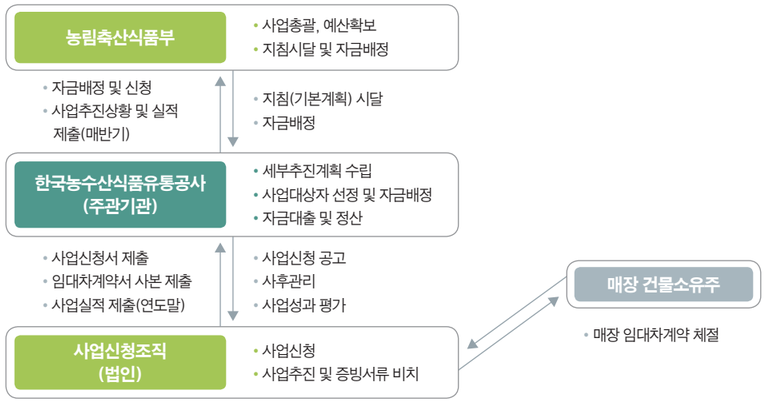
  ※ 위 지역 외에서 개설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의 별도 승인 필요
- 위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총괄법인에 소속된 회원조직은 총괄법인을 통해 신청

  ※ 총괄법인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조합 및 개별 법인이 신청

다. 지원한도액

- 매장당 2억 4,000만 원(총사업비 3억 원 기준)
  -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액은 매장당 360백만 원 이내에서 조정 가능
  - 매장면적 50㎡ 미만은 지원 제외

사업절차(표준프로세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지원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자금 지원을 통한 인증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업인 · 소비자 편익 증대
지원 내용	〈자금지원〉 친환경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직구매 자금 지원
지원 조건	융자 80%(연리 3%, 유통업체의 경우 4%, 1년 상환), 자부담 2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농협중앙회

* 상세 : 2014년도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계획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

•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

나. 지원자격 및 요건

1) 영농조합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판하는 등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 · 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거래

3) 신규 지원업체에 대하여 직거래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 지원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사용실적, 사업실적 부진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감액 등 조정 지원

4) 신청제한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제한

다. 지원한도액

• 업체당 10억 원 이내

라. 사업의무량

• 생산자 · 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 : 지원액의 125%이상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

•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 이상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결제자금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자금 지원을 통한 인증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업인 · 소비자 편익 증대
지원 내용	〈자금지원〉 친환경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직구매 자금 지원
지원 조건	융자 80%(연리 3%, 유통업체의 경우 4%, 1년 상환), 자부담 2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농협중앙회

* 상세 : 2014년도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계획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시행자

• 사업대상자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입주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법인

•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의 매출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고, 법인등록 1년 이상인 법인

– 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 타 사업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자 등 제외

다. 지원한도액

• 업체별 1회전(45일 이내)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 이내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
지원 내용	〈자금지원〉 친환경농산물 적정수수료와 실행수수료 차액 지원(인증심사 실적분만 인정)
지원 조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업시행 내용

구분	내용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운영	사업기간		• 2006년~계속
	사업추진 체계 및 재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비율 : 시설보완 자본보조 국고 30%
	사업 내용	사업대상	• 지자체 및 영농법인
		지원자격 및 요건	• GAP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지자체 및 영농법인 등
		지원대상시설	• GAP위생시설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농식품 국가인증홍보사업	사업기간		• 2009년~계속
	사업추진 체계 및 재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수혜자 : 소비자 및 인증농식품 생산자 • 지원비율 : 국고 100%
	사업내용		• 주요 매체를 통한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 소비자 인지도 조사 등
농식품지리적표시 활성화	사업기간		• 2012년~계속
	사업추진 체계 및 재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수혜자 : 소비자 및 지리적표시품 생산단체 • 지원비율 : 국고 100%
	사업내용		• 지리적표시품 생산단체 교육 지원 • 지리적표시품 생산단체 품질관리비 지원 • 지리적표시품 유통경로 확대 지원 등

구분	내용	
유기가공식품 등 운영활성화	사업기간	• 2006년~계속
	사업추진 체계 및 재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사업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혜자 : 유기가공식품제조업체 및 유기농업인
	사업내용	• 각 국(國)의 유기인증제도 조사 등 지원 • 상호동등성 협정문 마련 등 지원 • 인증제도 정비 관련 간담회 등 •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연구용역 • 유기식품 동등성 검증 및 협정체결국 이행실태 점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사업기간	• 2009년~계속
	사업추진 체계 및 재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비율 : 국고 100%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소비촉진 행사 및 박람회 개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친환경농산물대한 대형유통업체 및 학교급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종합물류센터 건립으로 친환경농산물 물류비 절감 및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지원 내용	〈시설지원〉 종합물류센터 1개소(전남 나주시) 신규건립 지원
지원 조건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28,852	1,152	9,440	5,944	12,316
• 국비	14,426	576	4,720	2,972	6,158
• 지방비	14,426	576	4,720	2,972	6,158

사업시행 내용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비(설계비, 공사비, 시설비 등) 지원
- 친환경농산물의 상시거래 장소로서 가격형성, 수집분산, 유통정보 제공, 친환경인증 및 안전성 관리, 통합물류, 상품화 등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 2016년까지 조성하여 대표가격 형성,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비자 신뢰구축 등의 기능 수행으로 제한적 유통구조를 개방적 유통구조로 점차 확대 및 다양화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연구시설 건립
지원 내용	〈시설지원〉 친환경농업 전문 연구 · 교육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 국비 50%, 지방비 5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79,400	8,000	16,000	9,500	28,500
• 국비	13,400	4,000	8,000	4,750	14,250
• 지방비	5,876	1,600	3,200	2,650	5,700
• 자부담	7,524	2,400	4,800	2,100	8,550

* 상세 : 2014년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 사업시행지침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 연구개발(연구센터) 및 보급(기술보급센터)을 수행하는 대학(교) 및 지자체 등

나. 지원대상

•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2008년), 강원대 친환경농업연구센터(2009년), 고성 생명환경농업연구소(2010년), 경북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제주대 친환경농업연구센터(2012년), 충북 친환경농업연구센터(2013년)
  –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연구 · 교육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 지원

다. 지원형태

구분	지원형태(보조)	사업기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3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국비 50%, 지방비 50%	2년(1년차 50%, 2년차 50%)

라. 지원한도액(부지매입비 제외)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개소당 총사업비 100억 원
•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 개소당 총사업비 50억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자금지원〉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원 조건	국비 10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264,628	37,574	26,909	32,849	계속
• 국고	264,628	37,574	26,909	32,849	계속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48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

• 법률 규정에 따라 유기 ·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2010년 이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 해당연도 사업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

나. 지원형태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만 원/ha, 무농약 40만 원/ha, 저농약 21만 7,000원/ha
  – 밭 : 유기 120만 원/ha, 무농약 100만 원/ha, 저농약 52만 4,000원/ha
  – 유기지속직불 : 논 60만 원/ha, 밭 60만 원/ha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이며,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다.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지급기간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유기농산물은 5년(불연속인 경우 5회), 무농약 · 저농약농산물은 3년(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20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농산물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농산물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친환경안전 축산직접지불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친환경축산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급
목 적	친환경축산 확산 도모 및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지원 내용	〈자금지원〉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원 조건	국비 10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14,000	10,025	16,283	17,257	계속
• 국고	14,000	10,025	16,283	17,257	계속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48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나. 지원대상

• 대상축종 : 한 · 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다. 지원형태

• 지급단가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고
한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50원/리터	10원/리터	우유 1리터는 1.03kg
돼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계	200원/마리	60원/마리	토종닭은 30% 증액 지급
오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2원/개	
메추리알	-	4원/10개 혹은 4원/100g	
산양(식육)	-	4,584원/두	
산양(유)	-	34원/리터	

라. 지원한도액

• 지급한도액 : 유기축산물 3,000만 원/연간, 무항생제축산물 2,000만 원/연간

• 지급기간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는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조성

사업 개요

주요 내용	R&D와 수출 중심의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시설지원〉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 국내외 식품기업 · 연구소 · 연구기관 등 투자 유치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조성	4,000	4,050	13,419	34,794	계속

* 상세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내역서(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2014-49)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익산시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나. 지원대상

• 전북 익산시(232만㎡) 1개소

- 6개 기업지원시설, 식품기업 150개 및 연구소 10개

다. 지원형태

• 총사업비 : 5,535억 원(국비 1,358억 원, 지방비 608억 원, 민간 3,569억 원)

※ 지자체가 주관하는 배후복합단지(126만㎡) 조성비 미포함

농식품모태 펀드출자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정부 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하여 자펀드(농식품 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결성하고, 유망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사업 • 대규모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재정이외의 민간자본 유입
지원 내용	〈자금지원〉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식품경영체 집중투자
지원 조건	출자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원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재정투입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97	500	500	500	600
• 농특회계	507	-	-	-	-
• 농안기금	90	500	500	500	600

* 상세 : 농식품모태펀드 2014년 정기 출자금 운용계획

사업시행 내용

가. 출자대상 및 투자분야

1) 출자대상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을 구성할 수 있음

2) 투자분야 및 결성규모

구분	투자분야	펀드형태	개수	최대 출자비율	최소결성규모		
					모태펀드	민간출자	결성총액
일반 분야	농림축산	농림수산 식품 투자조합	1개 이상	50%	150억 원	15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식품업		3	50%	80억 원	80억 원 이상	160억 원 이상
	수산업		1	70%	100억 원	50억 원 이상	150억 원 이상
특수 목적 분야	소형 프로젝트		1	70%	70억 원	3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6차산업화		1	70%	70억 원	3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R&D		1	70%	70억 원	3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AgroSeed		1	90%	90억 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계			9개 이상		790억 원	540억 원 이상	1,330억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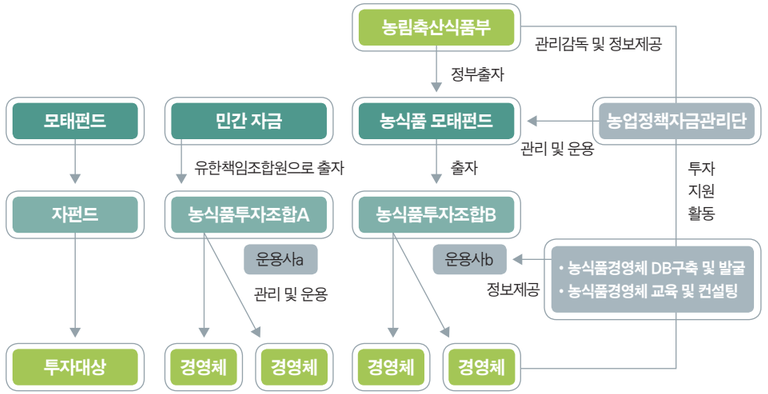
3) 투자대상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고시 제2011-200호에 따른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업절차(표준프로세스)



* 투자방식 : 주식(신주인수), 회사채, 프로젝트 투자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감자, 원예 · 특용작물 등 우수한 국산품종을 증식 · 보급할 수 있는 시설 · 장비 지원 • 종자산업전문인력양성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시설지원〉 우수 종자 증식 · 보급 기반조성 지원
지원 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간 : 세부사업별로 정해진 단가에 따름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41,748	22,800	22,697	17,859	58,127
• 국고	17,657	10,024	10,828	8,520	27,460
• 지방비	17,147	9,904	10,318	8,119	27,157
• 자부담	6,944	2,872	1,551	1,220	3,51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4번 사업

종자산업기반 구축

우수종묘 증식 · 보급 기반구축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지자체 : 시 · 도 및 시 · 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사업부지 사전 확보(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 소속 시 · 군(사업자가 시 · 도인 경우 시 · 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씨감자	300㏊	육묘(실생 · 접목)	–	녹비작물 종자	–
고구마 종순	300㏊	딸기 종묘	50㏊	종묘삼	200㏊
약용작물 종자	500㏊	과수 묘목	500㏊	마늘 종구	300㏊
버섯 종균	연면적 2㏊	화훼 종묘	–		

나.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종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세부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원품목(11개) : 씨감자, 고구마 종순,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육묘(실생 · 접목), 딸기 종묘, 과수 묘목, 화훼 종묘, 녹비작물 종자, 종묘삼, 마늘 종구

다. 지원형태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버섯 종균, 마늘 종구	50%	30%	20%
종묘삼	40%	40%	20%
딸기 원묘 · 보급묘, 육묘(실생 · 접목), 씨감자, 과수 묘목	30%	30%	40%

라. 지원한도액

- 개소당 지원기준

사업비	1년 국고지원액	지원분야(사업주체)
20~30억 원 (사업기간 2년)	지자체 : 5~7.5억 원 민간 : 3~7.5억 원	• 씨감자(시 · 도, 시 · 군, 생산자단체) • 고구마 종순(시 · 도, 시 · 군) • 약용작물 종자(시 · 도) • 버섯 종균(시 · 도, 시 · 군, 생산자단체)
12~20억 원 (사업기간 2년)	지자체 : 3~5억 원 민간 : 1.8~3억 원	• 실생 · 접목육묘(생산자단체)
8~12억 원 (사업기간 1년)	지자체 : 4~6억 원 민간 : 2.4~3.6억 원	• 딸기 원묘 · 보급묘(생산자단체) • 과수 묘목(시 · 도, 시 · 군, 생산자단체) • 화훼 종묘(시 · 도, 시 · 군) • 녹비작물 종자(시 · 도, 시 · 군)
5~8억 원 (사업기간 1년)	지자체 : 2.5~4억 원 민간 : 1.5~4억 원	• 종묘삼(생산자단체) • 딸기 원원묘(시 · 도) • 마늘 종구(시 · 도, 시 · 군, 생산자단체) • 실생 · 접목육묘(생산자단체)

- 시설설치 지원기준

시설구분	기준단가(한도)	비고
유리온실	600천 원/㎡ (1,000㎡기준)	• 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비닐온실	90천 원/㎡ (1,000㎡기준) 50천 원/㎡ (10,000㎡기준)	•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원예 · 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농업공업시설협회 참조
온실내부 시설	90천 원/㎡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 · 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 원/㎡ (10,000㎡기준)	• 원예 · 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조직배양실	2,000천 원/㎡ (330㎡기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을 포함한 기준단가
종균배양실	650천 원/㎡ (330㎡기준)	•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장 · 냉동시설, 냉 · 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공조시설 등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저온저장고	1,000천 원/㎡ (330㎡기준)	•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33~660㎡기준)
정선시설	1,700천 원/㎡ (330㎡기준)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저장빈, 포대봉합기 등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냉난방시설	사업시행 내용 참조	사업시행 내용 참조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의 국산화를 통한 과실생산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일괄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지원 내용	〈시설지원〉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 기반조성, 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지자체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민간 추진사업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	2,174	1,450	725.0	5,801
• 국고	-	1,087	725	362.5	2,901
• 지방비	-	652	580	217.5	1,595
• 자부담	-	435	145	145.0	1,305

* 상세 : 2015년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內 (2014년 10월 발표)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지자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 가능한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 · 배 주산지 농협(품목, 지역) 우선 지원

다.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기반조성,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세부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2)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완료 후 10년 이상 꽃가루를 생산 · 공급해야 함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 (부동산의 종물) 준공일로부터 7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 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라.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비율
  - 지자체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민간(농협,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면적이 1.0㏊ 이상이어야 함

마. 지원한도액

• 지원단가 : 7억 2,500만 원(국비 3억 6,250만 원 이내, 5㏊/1개소 기준)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품종보호출원 및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심사 및 재배시험의 전문성 제고
지원 내용	〈자금지원〉 신품종 육성에 따른 제비용 보상, 해외출원비용 지원
지원 조건	국고보조 100%
관할 부처	국립종자원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48	51	85	88	88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국립종자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 신품종개발비 : 2012년 이후 품종보호 등록 품종 여부, 신품종개발비 지원신청 자격 유무 검토
    ※ 신품종개발비 지원 이후 3년 이내에 실용화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을 소멸시킬 경우 향후 3년간 신품종개발비 지원신청 자격 제한
  - 해외출원비 : 2012년 이후 해외에 품종보호 등록 또는 식물특허 등록 품종 여부 검토
  - 특수검정비 : 2014년도에 실시된 특수검정인지 여부 검토
  - 해외연수 :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민간육종가로 분야별 민간육종가 협의회 회원인지 여부 검토
•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
  - 종자업 등록자 중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며,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 · 판매 신고 실적이 있고, 신청량이 무 100kg, 배추 150kg, 박과 15kg 이상
• 해외현지 품종전시포 사업
  - 해외에서 현지 환경적응성, 시장성 등을 파악하고 특성 및 성능 홍보를 희망하는 종자(채소) 업체
• 종자수출협의회
  - 국내 품종(종자)의 해외 수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자(채소)업체 중 종자수출협의회 회원인 업체

다. 지원대상

•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 신품종개발비 : 영세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 출원 · 등록 장려금
  - 해외출원비 : 민간육종가 및 중소기업이 해외출원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일부
  - 특수검정비 : 민간육종가가 품종육성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검정을 활용 시 분석 비용 일부
  - 해외연수 : 종자 선진국 시장정보 수집 및 육종기술 견학을 통한 우수품종 개발 기회
  - 기타 : 민간육종가 육성품종의 실용화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지원(홍보 카탈로그 제작 · 배부 등)
•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
  - 국내 종자 생산비 일부

• 해외현지 품종전시포 사업
  – 종자박람회 : 출품비
  – 인도 · 인니 전시포 : 전시포 위탁 설치 · 운영
• 종자수출협의회 사업 지원
  – 국내 우수 품종(종자)의 해외 수출과 연관된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 운영

라. 지원한도액

•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신품종개발비	해외출원비	특수검정비	해외연수
품종 당 4백만 원	품종 당 500만 원	소요비용의 50%	연수비용의 50%

•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
  – 지원품목별 지원 상한 단가 범위 내에서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종자 수매 단가의 50% 수준 지원

※ 품목별 지원 상한 단가 : 무 22,500원/kg, 배추 13,500원/kg, 고추 138,000원/kg, 수박 170,000원/kg, 오이 125,000원/kg, 멜론 167,000원/kg, 참외 163,000원/kg, 호박 35,000원/kg, 대목용 박 54,000원/kg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원원종 및 원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직접생산비 보조
목적	주요 식량작물의 고품질 보급종을 생산 · 공급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지원 내용	〈자금지원〉 지자체의 대행 생산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생산비 보조
지원 조건	국비 10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원원종 및 원종생산	3,950	3,983	4,083	4,083	4,411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각 도(8개도 농업기술원 및 농산물원종장)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동계 · 하계작물 종자 생산 · 공급계획에 따른 원원종(11작물) 및 원종(6작물) 생산포장 운영

다. 지원형태

• 예산 범위 내에서 8개도 농업기술원 및 농산물원종장에 지자체경상보조금 지원

라. 지원한도액

• 지자체별 원원종 및 원종 생산면적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 별도의 지원한도액은 없음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사업 개요

주요 내용	민간종자기업을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유치하여 종자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 선정된 기업은 단지조성이 완료되는 2015년 말에 입주하여 육종연구 본격화
지원 내용	〈시설지원〉 육종포장 및 첨단연구 지원센터 등 연구 인프라 지원
지원 조건	국비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311	6,097	27,145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김제시(공동사업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종자업 등록 사업자로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활용해 육종 및 종자개발을 하고자 하는 개인 육종가, 기업, 농업법인 또는 그들 간의 조직

다. 지원대상

• 단지구성

총 부지면적	공동연구 지원시설	연구포장, 기업 연구동
54.20*ha*	9.3*ha*	44.9*ha*
(40년 장기임대)	첨단육종연구지원실, 농기계 및 일반창고, 교육 및 실험온실 등	시험연구포장, 연구동, 기타 등

• 입주기업 지원내용

구분	수출시장확대형(2개 기업)	수출시장개척형(9개 기업)	역량강화형(9개 기업)
시설제공(임대)	50%	30%	20%
부지제공(임대)	40%	40%	20%
첨단 육종연구 지원서비스	• 직접지원 : 분자표지 및 기능성 분석, 종자순도 검정 등 • 간접지원 : 우전자원 분양, 병리검정 등		
종자 사업화 지원서비스	• 수출 관련 컨설팅 및 해외 네트워크 연계 •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 • 공동 전시포 운영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글로벌 시장개척 종자(10품목) 및 품종보호 전략 종자(10품목) 개발
지원 내용	〈자금지원〉 전략 수출 종자 20개 이상 개발 지원
지원 조건	정부출연 10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골든씨드프로젝트	1,805	21,094	22,094	22,739	148,733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39번 사업(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內),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내역서(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2014-65)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골든씨드프로젝트 운영지원센터)

나. 지원대상

•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10개 품목), 품종보호 전략종자(10개 품목) 개발

구분(품목 수)	품목	프로젝트 수
채소종자사업단(5개 품목)	고추, 파프리카, 배추, 수박, 무	39
원예종자사업단(6개 품목)	토마토, 양배추, 양파, 감귤, 백합, 버섯	35
수산종묘사업단(4개 품목)	넙치, 전복, 바리과, 김	10
식량종자사업단(3개 품목)	벼, 옥수수, 감자	10
종축사업단(2개 품목)	돼지, 닭	11

사업절차(표준프로세스)

사업추진 및 진도관리 계획수립	단계별 추진계획 확정 및 진도관리 계획수립	• 사업단 운영계획에 따라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후 심의 · 확정 • 사업단장은 프로젝트 연구기관 선정 후 6개월 이내 진도관리 계획 수립, 전문기관 장이 승인
	사업단 현장점검	• 사업단 구성 후 6개월 이내 사업단별 현장점검 실시(전문기관)
진도관리 및 평가	연차평가	• 연차평가위원회 구성,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중간평가, 단계평가	• 진도관리 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간 및 단계평가 실시
종료평가 및 추적평가	최종평가	• 종료되는 프로젝트 및 사업단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후속 프로젝트의 추진여부 결정
	추적평가	• 종료된 프로젝트에 대해 종료 후 5년간 추적관리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마늘 주아를 이용한 우량 씨마늘 생산 ·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해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및 종구갱신을 위한 저장 · 보관시설, 생산 기자재, 교육 및 홍보비
지원 조건	국고보조 50%, 지방비 30%(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지방비 50%), 자부담 2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이후
합계	-	1,800	600	600	5,400
• 보조	-	810	300	300	2,700
• 지방비	-	750	180	180	1,620
• 자부담	-	240	120	120	1,080

* 상세 : 2013년도 마늘우량종구생산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4-①번 사업(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內)

사업시행 내용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마늘 재배면적이 300㏊ 이상인 시 · 군의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중 우량 씨마늘 생산 · 보급을 위해 대주아 파종을 농업인과 계약한 자
- 생산자단체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은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지원자격 인정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내용 참조

나. 지원대상

- 저장 · 보관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 및 일반창고, 건조시설 등
- 생산 기자재 : 콘테이너, 파종기 · 수확기(부착형), 주아선별기 및 씨마늘 선별기 등
- 교육 및 홍보비 : 대주아 및 씨마늘 생산 교육비, 판매 홍보비

다. 지원형태

- 저장 · 보관시설 40%, 생산 기자재 50%, 교육 및 홍보비 1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별로 조정 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농림축수산식품 우수 기술이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 • 농림축수산식품 분야 신성장동력원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농가의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사업화 연구
지원 내용	〈자금지원〉 농림바이오 분야 각 단계의 연구성과를 이용한 사업화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 조건	정부출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술사업화지원사업	8,000	7,200	5,760	6,960	-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39번 사업(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內), 농식품 기술사업화 디렉토리북(2014년 7월 발행)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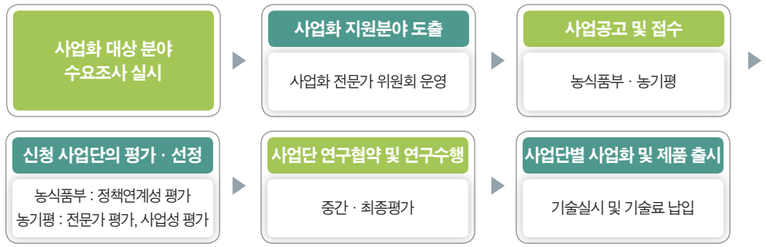
- (1단계) 기획지원 : 연구성과(특허, 시제품)를 보유한 농식품 산업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 및 중앙회 포함)
- (2단계) 기술사업화지원 : 기획지원 과제 중 3년 이내 개발이 완료되고 연구종료 후 5년간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기관

※ 2014~2015년 연구수행기관은 기획지원사업에 참여한 산업체에 한해 선별지원 예정

나. 지원대상

- (1단계) 기획지원 : 기술사업화 기획, 기술성평가 및 컨설팅 지원
  - 과제당 총 3,000만 원, 6개월간 지원
- (2단계) 기술사업화지원 : 시제품생산, 인증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 과제당 총 9억 원(1년 3억 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사업절차(표준프로세스)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생명자원의 생산 · 응용 ·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생명산업 육성에 기여
지원 내용	〈자금지원〉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생명자원활용, 향토자원 고부가가치기술, 민간연구지원조직 육성, 현장우수기술발굴, 기초연구성과후속지원 등
지원 조건	정부출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농생명산업기술 개발	52,181	52,271	44,282	46,732	–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39번 사업(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內),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www.fris.go.kr) 농식품부 사업안내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기후변화 대응
  – 센서 ·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농업 · 농촌시설의 돌발재해 조기 예 · 경보체계 개발
  – 내재해 대응 안정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작물 형질개발 및 품종육성
• 녹색기술
  – 민간주도형 녹색 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생태환경 보존 · 유지 및 성장동력 창출
  – 비목재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 가축 폐기물을 활용한 경제성 있는 에너지생산 실증플랜트 개발
• 생명자원 활용
  – 고품질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리그닌 생합성 조절 기술 개발
  – 수입대체 및 한중 FTA 대비 고품질 봄 당근 F1 품종개발
  – 돼지줄기세포 유래 분화세포와 생체지지체 개발 및 상용화
• 농림향토자원 고부가가치 기술
  – 개느삼의 조경식물화를 위한 증식과 유전 연구
  – 산국 Essential oil 성분을 이용한 동맥경화 치료제 · 완화제 개발
  – 지역연계 브랜드 쌀 품종육성 및 산업화 제품 개발
• 민간연구지원조직육성
  – 내병성 작물육종을 위한 병리검정 지원
  – 발효기술을 적용한 사료첨가제 민간위탁 생산시스템 구축
  – 질환동물 모델을 이용한 농업바이오 분야의 CRO 구축
• 현장우수기술발굴
  – 가축 소모성질환 근절방안 및 농가 적용 프로그램 개발
  – 고려인삼과 미국삼의 종간교잡종 F1 불임타파로 신품종 소재 창출
  – 꿀벌의 주요 현안 감염성 질병에 대한 통합 방제기술 개발
• 기초연구후속지원
  –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한 u-IT기반 사양관리 모니터링기술 개발
  – 곤충자원을 이용한 양돈사료화 이용 기술 및 제품 개발
  – CCGIS를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 채소류의 취약성 평가, 재배지 예측 및 생리생태적 변이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제(연구팀) 응모 및 신청	• 과제모집을 위한 공고 및 홍보 – 산 · 학 · 관 · 연 협동연구팀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과제의 선정 및 확정	• 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비밀서면 · 공개발표 평가 및 과제선정 • 최종 확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 · 보완	• 전문기관의 장이 각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 보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전문기관)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전문기관)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전문기관) •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등 현장 확인 · 점검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 연차실적 · 계획서 제출 및 연차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전문기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 기술개발결과보고서 배포 • 중앙 및 지방시책사업에 반영 •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특허출원 등 산업화에 활용

농림축산검역 검사기술개발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가축질병 신속진단, 예방, 소독, 방역 및 백신개발, 가축질병 억제제 개발 등 수행
지원 내용	〈자금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사업 지원
지원 조건	출연 100%
관할 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 상세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농식품부 사업안내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지원대상

•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대응 기술 개발
•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 첨단융합기술응용 축산 위생관리기술 및 전염병 방제기술 개발
• 기후변화대응 전염병 예방 · 관리 능력 강화 및 대책 수립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의 미래성장동력형 원천기술 확보
• 정책지원 및 현장을 선도하는 검역 및 방역기술 확보
• 세계적 수준의 국제표준실험실 인정 확대 및 운영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연구성과 극대화

가. 2014년도 주요 추진내용

• 진단 · 예방 기술
  – 국내분리 H5N1형 HPAI의 주요 야생조류 종별 병원성 및 병리기전 구명
  – 유전자칩 등을 이용한 검역용 신속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시스템 개발
• 검역 · 방역 기술
  – 가축방역을 위한 대인 소독용 시설장비 개발
  – 고위험성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검역 · 방역기술 개발
•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 구제역 백신 효능 증가 및 새로운 분자 면역보조제 개발
  – 가축전염병(유해미생물 및 독소)제어용 신소재개발
• 동물의약품 개발
  – 구제역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
  – 오리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모넬라 백신 개발

사업절차(표준 프로세스)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제(연구팀) 응모 및 신청	• 과제모집을 위한 공고 및 홍보 – 산 · 학 · 관 · 연 협동연구팀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과제의 선정 및 확정	• 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비밀서면 · 공개발표 평가 및 과제선정 • 최종 확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 · 보완	• 전문기관의 장이 각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 보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전문기관)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전문기관)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전문기관) •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등 현장 확인 · 점검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 연차실적 · 계획서 제출 및 연차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전문기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 기술개발결과보고서 배포 • 중앙 및 지방시책사업에 반영 •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특허출원 등 산업화에 활용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사업 개요

주요 내용	가축질병 신속진단, 예방, 소독, 방역 및 백신개발, 가축질병 억제제 개발 등 • 시급성이 높은 민간 분야의 R&D에 집중 지원
지원 내용	〈자금지원〉 진단 · 예방 · 검역 · 방역 기술,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동물의약품 개발 지원
지원 조건	정부출연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4,000	4,000	3,748	5,798	–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39번 사업(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內),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www.fris.go.kr) 농식품부 사업안내

인삼신품종 및 대량증식기술 개발 · 보급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경쟁력강화를 위한 우량 신품종 육성 및 대량증식 기술 개발, 신품종 보급면적 확대를 위한 안정 · 신속 보급체계 확립
지원 내용	인삼 고품질 내재해 품종 개발, 인삼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지원 조건	보조 100%

* 상세 : 2015년도 농업인지원 투자 · 융자 계획(안)(2014월 9월 발표)

목재생산기반 조성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안정적 목재 공급을 위한 국유림 목재생산량 확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권역별 목재유통센터 추가 조성, 목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재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 내용	목재생산 대상지 신규확보, 지속가능한 영급구조로 개선 및 임목 생산 · 수집 시스템 개선
지원 조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국유림은 보조 100%)
관할 부처	산림청 목재생산과

* 상세 : 2015년도 농업인지원 투자 · 융자 계획(안)(2014년 9월 발표)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지원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 2017년까지 원예(채소 · 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 · 개축 100개소 추진
지원 내용	〈시설지원〉 단지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실소요액 지원
지원 조건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계	440,846	195,700	205,770	210,915	421,830
• 국고	80,920	39,820	47,780	49,080	98,160
• 융자	157,626	56,330	38,540	39,135	78,270
• 지방비	121,380	59,730	71,670	73,620	147,240
• 자부담	80,920	39,820	47,780	49,080	98,116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26번 사업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1)원예전문생산단지

•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 · 화훼)의 농업인 · 농업법인

2) 일반원예시설

• 원예전문생산단지 이외의 일반원예시설을 운영 중인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 · 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
-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2013년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 농업법인
- 국산품종으로 생산 · 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 태풍 · 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 · 농업법인
- 시 · 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인 · 농업법인
-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 ·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다. 지원대상

• 온실 · 공정육묘장 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및 시설, 에너지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예냉 · 저장 · 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등
- 지원대상 기계 · 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라. 지원한도액

• 원예전문단지(10㏊ 기준) : 70억 원(지원 하한액은 사업비 기준 5억 원)

• 일반원예시설(1㏊ 기준) : 7억 원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 · 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첨단온실 신축 지원을 통한 원예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국내 가격안정 도모 • 첨단온실 경영 활성화를 위한 온실 신축 지원면적 확대
지원 내용	〈시설지원〉 수출 또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 신축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조건	국고융자 100%(융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관할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첨단온실신축지원	-	-	150,000	150,000	750,000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48-②번 사업(친환경농업직불제 內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사업시행 내용

가. 사업대상자

• 일반유형 : 온실을 신축해 채소나 화훼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지자체 개발유형 : 일반유형 대상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귀농법인

나. 지원대상

•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온실

- 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등 포함

다. 지원형태

구분	신청규모	온실유형	적용금리	상환기간
일반유형	2㏊	철골온실	1%	5년 거치 10년 상환
		비닐온실		3년 거치 7년 상환
	2㏊초과 3㏊이하	철골온실	2%	5년 거치 10년 상환
	3㏊초과		3%	
지자체개발유형	3㏊초과	철골온실	2%	5년 거치 10년 상환

라. 지원한도액

• 지원한도액 : 1㏊당 철골온실 30억 원, 비닐온실 7억 5,000만 원

• 지원범위

- 철골온실 : 사업대상자별 0.5㏊이상~5㏊

- 자동화비닐온실은 사업자별로 0.2㏊ 이상~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개요

주요 내용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여 한식 · 농식품 수출확대 및 국가 브랜드 제고
지원 내용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경쟁력 강화, 한식 홍보
지원 조건	사업별 국비 50~100%

* 상세 : 2014년 한식세계화 사업(사업명 변경 : 2015년 이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 개요

주요 내용	• 해외시장개척 :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과 현지시장의 한국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식품산업 발전 도모 • K-Food 프로젝트 : 시장개방 등을 기회로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지원 내용	•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 수출정보 등 인프라 구축, 수출 유망품목 육성, 공동브랜드 육성, 품목별 공동마케팅 지원, 해외물류기반 구축 등 • 해외 마케팅사업 :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 해외 판촉행사 지원, 바이어 거래 알선, 해외 홍보 등
지원 조건	국비 100%

* 상세 : 2014년 해외시장개척 사업 및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사업(사업명 변경 : 2015년 이후 두 사업 통합)

단기소득임산물 소득기반정비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개요

주요 내용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 ·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임산업 발전 지원
지원 내용	밤대체작목조성, 산림작물생산단조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시설, 임산물저장 · 건조시설 지원
관할 부처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상세 :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30번 사업 內

FTA 국내보완대책 세부사업

2015년,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포함
(피해보전대책 제외)

품목별 경쟁력 제고

축산 경쟁력 제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축산계열화사업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축산계열화사업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 농식품시설현대화
- 가축재해보험
-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 가축질병공제시범사업
- 한국형메쯔거라이경영컨설팅
-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혈액자원화시설
- 축산물통계관리시스템구축
-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축산물 수급관리

-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
-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축산물위생안정성

- 축산물이력제
- 축산물HACCP컨설팅

친환경축산 지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 친환경동물복지직불제
- 악취저감시설지원
- 축산환경관리원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 친환경축산물유통활성화및직거래지원

가축방역

- 가축방역사업
-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사업
- 가축질병대응

축산기술 보급

-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 가축개량지원사업
- 축산물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사업

원예 경쟁력 제고

생산 경쟁력 강화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 과원규모화사업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유통경쟁력 강화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인삼 · 약용작물계열화사업
- 인삼생산 · 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식품 · 외식종합자금사업
- 감자저온저장시설지원
- 맥류건조 · 저장시설지원사업
- 콩유통종합처리장지원사업
- 계열화경영체육성사업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 마늘 · 양파자조금사업

근본적 체질 개선

맞춤형농정 추진

신규농업인력 육성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안정화

- 농업재해보험
- 농업재해재보험금
- 밭농업직불제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농기계임대사업

영농규모화

- 농지매입 · 비축사업
- 경영이양직접직불제
- 농지연금

생산기반 조성

- 수리시설개보수
- 배수개선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 국가인증농식품지원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건립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식품산업 육성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종자산업 육성

- 종자산업기반구축
- 품종심사및재배시험
- 원원종및원종생산
-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 골든시드프로젝트
- 마늘우량종구생산단지조성사업

R&D 투자확대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인삼신품종및대량증식기술
- 개발 · 보급
- 목재생산기반조성

농식품 수출 촉진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첨단온실신축지원
-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 수출인프라강화
- 단기소득임산물 소득기반정비 및 유통구조개선